

지방세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국외 정책연수 결과 보고서

- 목 적 : 지방세 제도 벤치마킹 등 업무역량 강화
- 기 간 : 2017. 5. 25.(목) ~ 6. 5.(월) / 10박12일
- 연수국가 :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스위스
- 연 수 자 : 38명(도 2명, 시군 36명)
- 정책과제
 - (프랑스) 지방세 조직과 운영 체계 및 납세자 편의시책
 - (이태리) 신세원 발굴 등 지방세입 확충 사례
 - (스페인) 지방분권적 조세제도와 체납처분 제도 벤치마킹
 - (스위스) 지방정부 지방세 부과 자율결정권과 조세경쟁



목 차

I. 국외연수 개요	1
II. 방문국가 연수	4
□ 프랑스	4
1. 연수개요	4
2. 일반현황	4
3. 연수내용	7
4. 방문기관 질의응답	19
5. 프랑스 지방세 제도 시사점	21
□ 이탈리아	24
1. 연수개요	24
2. 일반현황	24
3. 연수내용	27
4. 이탈리아 지방세 제도 시사점	30
□ 스페인	31
1. 연수개요	31
2. 일반현황	31
3. 연수내용	33
4. 방문기관 질의응답	40
5. 스페인 지방세 제도 시사점	43
□ 스위스	46
1. 연수개요	46
2. 일반현황	46
3. 연수내용	48
4. 스위스 지방세 제도 시사점	56
III. 연수소감	61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 공무원」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

I 국외연수 개요

1. 연수기간 : 2017. 5. 25.(목) ~ 6. 5.(월) [10박12일]
2. 연수국가 :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3. 방문도시
 - 파리, 밀라노, 베니스, 모나코, 니스, 마르세이유,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4. 연수내용
 - 우리나라와 유럽의 조세체계 특징 및 운영실태 비교
 - 신세원 발굴, 지방세 징수제도, 체납처분 절차 등 벤치마킹
 - 지방세 분야 브리핑 및 질의 응답
5. 지도상 이동경로



6. 세부일정

○ 일 정 : 2017년 5월 25일(목) ~ 6월 5일(월)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일 정
제 1 일 5월 25일 (목)	인 천 파 리	AF 267 (에어 프랑스)	01:00 08:55 13:50	전남도청/광주 출발 → 인천(리무진 2대) 인천국제공항 출발, 파리 향발(12시간 50분) 파리 공항 도착(우리나라보다 8시간 느림) ▶ 루브르 박물관, 샹제리제 거리 등 관람, 세느강 유람선
제 2 일 5월 26일 (금)	파 리	전용차량 고속열차	오 전 오 후	◎ 공식일정 : 파리 시청 세정부서 방문 - 지방세 조직, 조세체계 및 납세자 편의시책 ▶ 파리 → 제네바 : T.G.V.(프랑스 고속열차)
제 3 일 5월 27일 (토)	제네바 인터라켄 밀라노	전용차량	오 전 오 후	◎ 공식일정 : 스위스 조세 제도에 대한 토론 - 지방정부 조세부와 자율결정권과 그에 따른 조세 경쟁 ▶ 융프라우 등반, 얼음궁전 및 만년설 감상 ▶ 밀라노 스칼라 극장, 두오모(성당) 관람
제 4 일 5월 28일 (일)	밀라노 베니스	전용차량	오 전 오 후	밀라노 → 베니스(4시간 소요) ▶ 산마르코 광장 등 관람, 수상 곤돌라 탑승
제 5 일 5월 29일 (월)	베니스 니스 모나코 마르세이유	항공기 전용차량	오 전 오 후	베니스 → 니스(항공 U2 3353) ▶ 니스 랜드마크인 니스 해변, 마세나 광장 관람 ▶ 모나코 성당, 모나코 왕궁 등 시가지 관람
제 6 일 5월 30일 (화)	마르세이유 아 를 카르카손	전용차량	오 전 오 후	◎ 공식일정 : 이탈리아 조세체계 토론 - 이탈리아 신세원 발굴 등 조세제도 자유 토론 ▶ 마르세이유 노트르담 대사원 관람 ▶ 고희의 도시 아를 방문, 로마 원형경기장 관람
제 7 일 5월 31일 (수)	카르카손 바르셀로나	전용차량	오 전 오 후	카르카손 → 바르셀로나(4시간 소요) ▶ 가우디 대성당, 구엘공원, 황영조 기념비 관람
제 8 일 6월 01일 (목)	바르셀로나 몬세라트 사라고사	전용차량	오 전 오 후	◎ 공식일정 : 스페인 지방세 부과·징수 제도 토론 - 고액채납자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제한 등 ▶ 몬세라트 회백산 기암괴석, 수도원 등 관람
제 9 일 6월 02일 (금)	사라고사 마드리드	전용차량	오 전 오 후	사라고사 → 마드리드(4시간 소요) ◎ 공식일정 : 마드리드 시청 세정부서 방문 - 지방분권적 조세제도와 채납처분절차 벤치마킹
제 10 일 6월 03일 (토)	마드리드 톨레도 마드리드	전용차량	오 전 오 후	◎ 공식일정 : 국외 정책연수 종합정리 - 국가별 국외정책연수 결과 토론 및 종합정리 ▶ 톨레도 중세시대 시가지 견학 ▶ 스페인 왕궁 및 마요르 광장 관람
제 11 일 6월 04일 (일)	마드리드 세고비아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항공)	전용차량 KL 1704 KL 855	오 전 오 후 17:10 21:35	마드리드 → 세고비아(2시간 소요) ▶ 알카사르(내부), 로마 수도교 등 구시가지 관람 마드리드 출발 / 암스테르담 도착(19:50) 암스테르담 출발
제 12 일 6월 05일 (월)	인 천		14:40 20:30	인천 도착 인천 출발 → 전남도청/광주(리무진 2대)

7. 연수자 현황

소 속	역 할	직 급	성 명	정 책 과 제
본 청	단 장	행정 4급	고 병 주	연수단 총괄
본 청	인 솔	세무 6급	김 대 형	국외 정책연수 인솔담당 · 연수결과 보고서 작성(총괄)
광 양	1팀 (10명)	행정 5급	이 영 길	1팀 리더 및 팀원관리
목 포		행정 6급	차 명 신	· 연수결과 보고서 작성 프랑스와 우리나라 지방세 제도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목 포		세무 6급	안 창 섭	
여 수		세무 6급	윤 경 희	
여 수		세무 7급	김 광 선	
순 천		세무 6급	이 현 태	
순 천		세무 7급	김 양 현	
나 주		세무 6급	임 희 택	
나 주		세무 7급	박 종 화	
광 양		세무 7급	이 서 정	
곡 성	2팀 (8명)	행정 5급	안 행 옥	
담 양		세무 7급	장 윤 경	· 연수결과 보고서 작성 이탈리아와 우리나라 지방세 제도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구 례		행정 5급	정 민 호	
구 례		세무 6급	손 기 원	
고 흥		세무 6급	홍 대 원	
고 흥		세무 9급	박 동 수	
보 성		세무 6급	이 봉 순	
화 순		행정 6급	배 소 연	
장 흥	행정 5급	장 공 준	3팀 리더 및 팀원관리	
장 흥	3팀 (9명)	세무 6급	문 병 옥	· 연수결과 보고서 작성 스페인과 우리나라 지방세 제도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강 진		행정 5급	마 국 진	
강 진		세무 7급	김 장 명	
장 성		운전 6급	변 재 금	
영 암		행정 5급	김 종 현	
영 암		세무 6급	남 숙 희	
무 안		세무 7급	정 재 호	
영 광		행정 9급	서 화 성	
완 도		행정 5급	최 창 주	
함 평	4팀 (9명)	행정 6급	김 선 근	· 연수결과 보고서 작성 스위스와 우리나라 지방세 제도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함 평		세무 6급	김 선 자	
영 광		세무 6급	송 승 민	
해 남		세무 7급	최 수 진	
완 도		세무 6급	박 영 민	
진 도		행정 5급	김 영 희	
신 안		행정 5급	송 광 민	
신 안		세무 7급	박 희 성	

II 방문국가 연수

프랑스

1팀

프랑스 지방세 제도 연구

1. 연수개요

- 방문일자 : 2017. 5. 26.(금)
- 연수목적
 - 프랑스 선진 지방세 제도 및 납세편의 시책 등 벤치마킹
- 방문기관 : 프랑스 파리시청
- 연수자 현황
 - 전남도청 및 22개 시군 지방세 담당자 (38명)
- 내 용 : 프랑스 지방세 제도 브리핑 및 질의응답

2. 일반현황

- 프랑스 개요
 - 공식명칭 : 프랑스 공화국 (la République française)
 - 수 도 : 파리(Paris)
 - 인 구 : 약 66,259,012명 (2014년 기준)
 - 면 적 : 643,801km²
 - 언 어 : 프랑스어(Franch)
 - 기 후 : 대륙성기후, 지중해성기후, 해양성기후
 - 국가형태 : 공화제
 - 정부형태 : 단일 국가양원제, 이원정부제공화국
 - 종 교 : 카톨릭(83%), 이슬람교(10%), 기타
 - 화폐단위 : 유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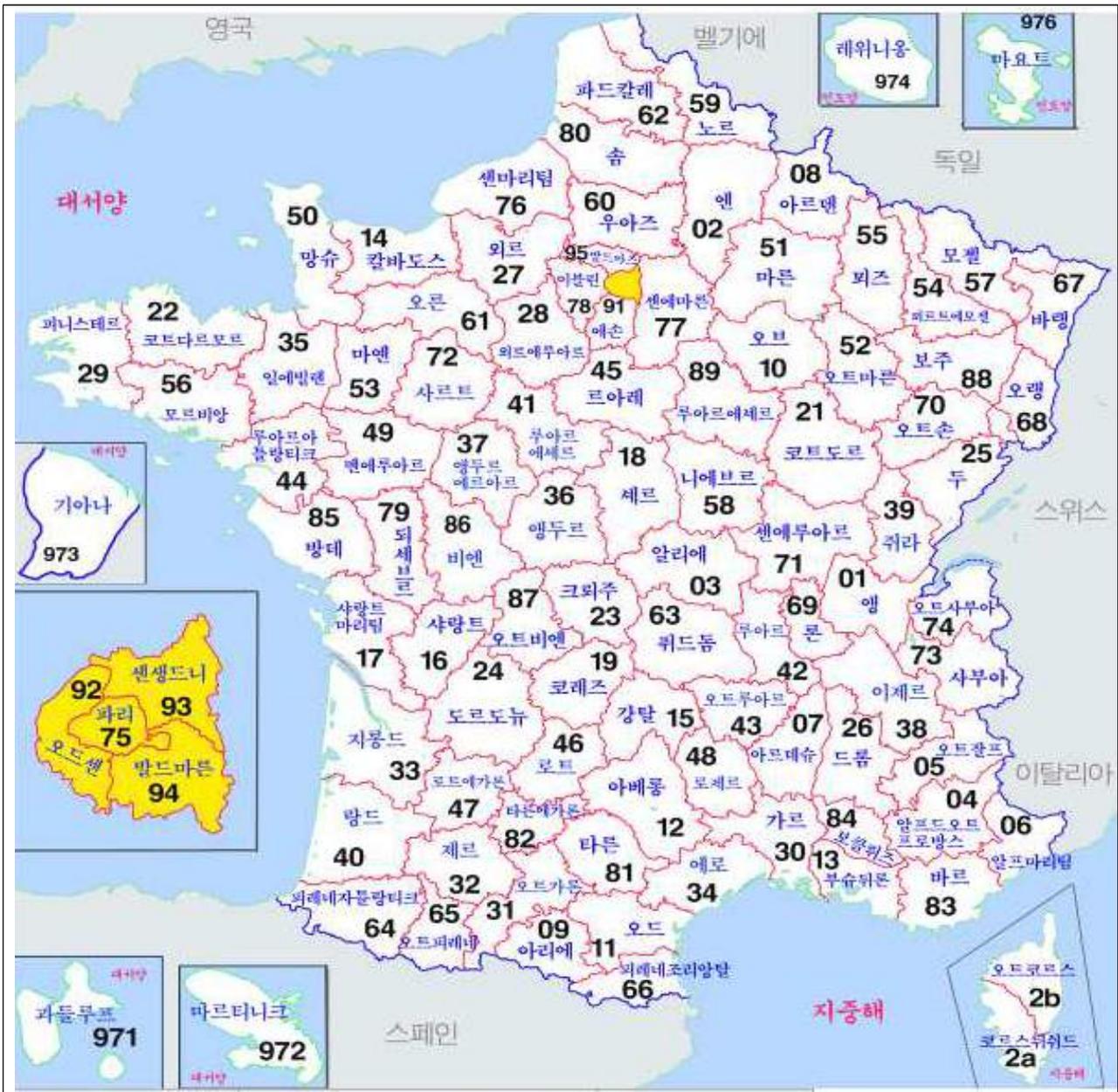
○ 프랑스 행정구역(26개 레지옹)

- 4단계 : 중앙, 26개 레지옹, 101개 데파르트망, 36,786개의 꼬뮌



9개 지역	광역(레지옹)	주도	비 고
일드 프랑스	일드 프랑스	파리	
파리 분지	오트 노르망디	루앙	
	피카르디	아무앵	
	바스 노르망디	캉	
	센터	오를레앙	
	상파뉴아르덴	샬롱	
	부르고뉴	디종	
노르파드 칼레	노르 파 디 칼레	릴	
동부	알자스	스트라스부르	
	로렌	메츠	
	프랑슈 콩테	베사콘	
서부	브리트니	렌	
	페이드라 누아르	낭트	
	프아투 샤탕트	푸아티에	
남서부	아키타니아	보르도	
	미디 피레네	톨루즈	
	리무쟁	리모주	
중동부	론 알프스	리옹	
	오베르뉴	클레르몽페랑	
지중해	프로방스 알프스 코트다쥐르	마르세이유	
	랑그도크 루시옹	몽펠리에	
	코르시카	아작시오	
해외 영토	레위니옹		
	마르티니크		
	과돌루프		
	기아나		

[프랑스 데파르트망 현황]



○ 지방정부의 종류(지방행정단위)

- 프랑스 지방행정단위는 「레지옹(Région)-우리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데파르트망(Département)-우리나라의 도(道)」과 「코뮌(Commune) - 우리나라의 시·군·읍·구와 유사」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각각 해당 지방의회를 두고 있는데, 매 6년 마다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한다.
- 반면, 3대 대도시인 파리, 리옹, 마르세이유는 하위 단위로서 구(Arrondissement, 區)를 두고 있다.

- 한편, 국가는 도지사를 레지옹과 데파르트망에 파견하고 그를 통해 각 지역에 분산된 국가행정 업무를 지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행정 조치의 예산규정 준수 여부 및 적법성 여부를 감독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발전·토지개발 정책을 준비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상을 한다.

○ 지방정부의 권한(재정자주권 보장)

- 프랑스는 헌법에 지방자치와 재정 자주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조정을 강화하지 않으면 프랑스는 EU 내에서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사실 EU 내에서 프랑스와 경쟁하는 독일은 프랑스 보다 훨씬 지방분권적이기 때문이다.
- 또한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합병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프랑스 국가가 분열될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3. 연수내용

□ 프랑스 조세제도

○ 프랑스 조세종류

- 프랑스의 조세는 그 성격에 따라 소득세, 사업세, 소비세, 자본세 등으로 구분되고, 부과징수 기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납세자에 따라 직접세, 간접세, 등록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국세는 프랑스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재산세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목은 국세에 해당된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 대부분 등록세, 재산과 관련된 세목이 해당되며, 지방세 부과기관으로는 “코뮌(Commune)”,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및 “레지옹(Région)”이 있다.

<프랑스의 조세체계>

구 분		세 목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유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주세
		유통세	인지세, 석유소비세
	관 세	관세	
지방세		등록세, 사업소세, 주민세, 나대지세, 부동산세	

○ 세무행정 체계

-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를 모두 공공재정일반총국 (Direction generale des Finances Publiques : 이하 DGFP라 약칭함)에서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조세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산업·고용부 산하의 DGFP 및 관세국(Direction generale des Douanes) 및 세제실 (Direction de la Legislation Fiscale) 등이 있다.
- 공공재정일반총국은 중앙조직(우리나라의 지방 국세청)과 일선세무서로 구별되며, 담당구역은 각 지방자치단위의 지역범위와 일치한다. 세무관서의 조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담당하는 조사과와 기업을 담당하는 기업과(Service des Impots des Entreprises) 및 대기업과(Direction des Grandes Entreprises)로 구별된다. 기업과는 주로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등기보전과(Conservations des Hypotheques)에서는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조세의 수입을 담당하고 있다.

○ 프랑스 지방세 제도

- 프랑스의 지방세는 재산과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과세 비중은 적은 편이다. 프랑스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를 모두 공공재정일반총국(Direction Generale Des Finances Publiques)에서 담당하게 하고 있다.
- 프랑스의 지방정부는 꼬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의 3계층으로 되어 있다. 지방세원의 분포를 보면 꼬뮌 : 데파르트망 : 레지옹이 54.8 : 34.8 : 10.4로 되어 있다.
- 프랑스의 지방세는 크게 지방 직접세와 기타 기여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방직접세 : 기타 기여금은 71.6 : 28.4로 지방 직접세의 비중이 높다.
- 지방 직접세는 오랜 역사를 가진 지방세로서 지방 직접세에 포함되는 주요 3대 세목으로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세 (taxe foncière sur les propriétés bâties),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 (la taxe foncière sur les propriétés non bâties), 주민세 (taxe d'habitation)로 전체 지방세수의 54.1%를 차지한다.
- 주요 3대 세목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투표에 따라 결정하므로 지방마다 다르다. 지방 직접세에는 주요 3대 세목외에도 지역경제기여금이 있으며, 여기에는 기업토지부담금, 기업부가가치부담금 등이 있다. 기타 기여금은 오물수거세, 권리양도세, 석유생산세, 꼬뮌운송세, 보험특별세 등이 있다.

<표> 프랑스의 지방세 세목별 구성비 (2011년)

(단위: 10억 유로, %)

구 분	꼬뮌	데파르트망	레지옹	합계
합 계	64.30 (54.8)	40.76 (34.8)	12.19 (10.4)	117.25
	100.0	100.0	100.0	100.0
지방직접세	46.02	18.28	4.31	68.62
	71.6	44.8	35.4	58.5
주요3대 세목 (이에 부가되는 세목포함)	34.78	10.94	-	45.73
	54.1	26.8	-	39.0
주 민 세	18.71	-	-	18.71
	29.1	-	-	16.0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세	15.11	10.94	-	26.05
	23.5	26.8	-	22.2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	0.96	-	-	0.96
	1.5	-	-	0.8
지역경제기여금 및 기타	11.24	7.34	4.31	22.89
	17.5	18.0	35.4	19.5
기업토지부담금	6.33	-	-	6.33
	9.8	-	-	5.4
기업부가가치부담금	3.88	7.13	3.67	14.68
	6.0	17.5	30.1	12.5
기업시설세	0.42	0.21	0.64	1.27
	0.7	0.5	5.3	1.1
상업면적세	0.61	-	-	0.61
	0.9	-	-	0.9
기타기여금 (도시화와 관련된 세목제외)	18.28	22.47	7.88	48.63
	28.4	55.1	64.6	41.5
오물수거세	5.89	-	-	5.89
	9.2	-	-	5.0
권리양도세	2.32	8.61	-	10.93
	3.6	21.1	-	9.3
석유생산세	-	6.53	4.27	10.81
	-	16.0	35.0	9.2
꼬뮌운송세	6.65	-	-	6.65
	10.3	-	-	5.7
보험특별세	-	6.23	-	6.23
	-	15.3	-	5.3
기 타	3.41	1.10	3.60	8.10
	5.3	2.7	29.6	6.9

□ 주요 지방세

○ 주민세

주민세는 인세(人稅)인 성격도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가치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의 성격도 있다. 거주용 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자(소유자 또는 임차자 모두 해당)에게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꼬퓌에서 매년 부과된다. 주민세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건축대장상 임대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 납세의무자

-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용 주택(habitation meublée)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용·사용하고 있는 자(개인 및 법인 포함)이다. 이용 또는 사용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해당 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임차 등의 구별이 필요없다.
- 그러나 일시적인 사용이 아니라 계속적(a tout moment)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거주자에게 배타적인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또한 거주용이어야 하므로, 거주에 필요한 생활 비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과세대상

- 주민세는 과세대상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 이는 주택 또는 별장이든, 거주하기 위한 가구 및 시설들이 충분히 있어서, 개인이나 가족이 거주하기 위한 건물을 의미한다. 이런 주택 및 별장들은 가구를 포함하여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간주된다.
- 반면, 거주건물에 가구가 없거나 거주건물이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가구의 보관용으로만 이용되거나 캠핑트레일러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과세표준

- 주민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물건의 「임대가치」이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1년간의 수입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 주민세 과세물건의 임대가치는 지방의원과 납세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가치는 부동산 시장의 임대가

치가 아니라 과세관청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추정된 임대가치이다. 프랑스 전체로 볼 때 1인당 주민세 과세표준 금액은 1,165 유로이다.

- 세 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회의 투표로 결정된다. 그러나 전년도의 2.5배 이상을 초과할 수 없거나 또는 프랑스 국가 전체 평균의 2.5배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세금부담의 상한선

- 거주자의 소득세와 보유세 및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주민세와 부동산 보유세)의 합계액이 소득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초과되는 금액의 환급을 세무서에 요구할 수 있다.

○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세 (Tax Foncière sur les te's Ba^ties)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비과세를 제외하고, 매년 프랑스 내에 소재하는 토지위에 건축된 건축물(Proprie'te's Ba^ties)에 부과된다.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에 해당되는 기간분에 대한 재산세는 환급의 대상이 된다.
- 그러나 해당 재산이 용익권(usufruit)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용익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과세대상

- 건축물 토지세 과세대상 물건은 해당 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과 기타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물에는 주택, 상가, 공장, 사무실 등이 있으며, 여기에는 예술품 및 통신설비, 창고, 공장 굴뚝, 선박 중 거주목적 및 상업목적으로 이용되기 위하여 묶여 있는 것도 포함된다.
- 비과세 되는 건축물 토지세 과세물건은 영구적 비과세와 일시적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된다. 영구적 비과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건축물, 농업 경영에 이용되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 프랑스 내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이 있는 토지 등이 있다.

-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토지대장 가액(revenu net cadastral)에 각 꼬뮌에서 정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토지대장 가액은 해당 과세물건 「임대가치 (valeur locative)」 50%에 상당한 금액이다. 임대가치는 해당 재화의 위치 및 활용성 등을 감안하여 「기준가액」 기초로 하여, 일정기간마다 「재평가된 금액(기준가액 ± 시장임대가치)」을 가산하여 산출된다.
- 이와 같은 재평가는 매 3년마다 실시된다. 이 기준가액은 1970년 1월 1일에 산정되었다. 재평가에 적용되는 배수는 직전연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 세 율

- 부동산 보유세의 세율은 각 꼬뮌, 데파르트망 및 레지옹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된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의회의 투표로 결정된다.

- 신 고

-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동산 보유세의 납세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다. 한편, 과세관청에서 임대가치를 확정하기 위하여, 재산의 소유자는 취득 또는 신축 건물의 완공 후 9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임대가치가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는 해당 건물의 재건축과 증축, 용도변경 등이 포함된다. 만일 납세의무자가 해당 부동산의 임대가치 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신고(과소 신고포함)를 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조사하여 확정하게 된다.

○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 (Tax Foncière sur les Propriétés non Bâties)는 매년 프랑스에 소재한 토지 중 법령에서 비과세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과세를 한다.

- 납세의무자

-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 과세대상

-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특히 철로위의 토지, 경마장, 연못, 광산, 염전, 늪 등이 포함된다.
- 반면, 공공기관 소유 토지 중 국도, 지방도, 군도, 강 등은 영구적 비과세 대상이다. 한편, 나머지 토지는 조건부 비과세이다. 해당 토지의 성격이 공공성(carac'tere public), 공익성 (servicepublic) 및 비수익성(improductivete ' de revenus)이 있는 경우는 비과세한다. 예를 들면 시민공원, 공동묘지, 성채, 제방, 과학박물관 등이 해당된다.

- 과세표준

- 건축물이 없는 토지세는 해당 토지의 임대가치에서 20%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즉, 해당 토지임대가치의 80%가 과세표준이 된다. 2010년 기준 프랑스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 납세의무자 1인당 과세표준 금액은 27.8유로이다.

- 토지의 평가

-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평가는 1961년 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1963년 토지세 부과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토지 평가는 1908년 12월 31일 장관지시 공문에 의거 하여, 해당 토지의 성격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를 하고 있다.

- 세 율

-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는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꼬뮌에서 매년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 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 지역경제기여금

프랑스는 2010년도부터 기존의 사업소세의 세목을 폐지하고, 「기업토지부담금 (Cotisation Fonc'iere es Entreprises : 이하'CFE'로 줄여씀)」과 「기업부가가치부담금(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e ' e des Entreprises : 이하'CVAE'로 줄여 씀)」에다가 각각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는 「지역경제기여금 (Contribution Economique Territoriale : 이하'CET'로 줄여 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해당 기업의 자산 가치와 아울러 기업의 부가가치를 요소로 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산만 있는 기업과 자산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 모두를 아우르는 세제로 보인다. 종전의 사업소세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어서 자산 또는 수익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고 본다.

<기업토지 부담금(CFE)>

- 납세의무자

- 매년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사업 소득이 있는 자이다. 단,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는 종전의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다.

- 과세대상 사업의 성격

- 기업토지부담금을 납부하는 자의 사업성격은 일시적이나 우발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아니고, 정상적이고 계속적인사업 활동(a titre habituel)을 하는 자이다.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또는 재임대사업자도 포함된다.
- 다만, 개인임대사업자의 외형금액이 12개월 동안 100,000유로 이하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 과세표준

- 기업토지부담금의 과세표준은 토지세가 부과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임대가치이다. 반면, 전체 면적의 9/10 이상을 수로로 제공하는 토지는 제외된다.
- 조세일반법 제1499조에 규정된 산업용 토지의 임대가치는 30%를 공제한 뒤의 금액으로 한다. 임대가치 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 과세기간 2년 전의 가격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도 위원회에서 가감 조정한다.

- 세 율

- 기업토지부담금에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기업 부가가치 부담금(CVAE)>

- 납세의무자

-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외형금액이 연간 152,500 유로 이상 인자는 기업 부가가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이 세목은 매년 1월 1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 부가가치 산출

- 기업의 부가가치세 계산시 산출되는 부가가치 **【매출액-매입액】**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 적용세율 및 부담액

- 기업 부가가치 부담금의 적용 세율은 1.5%이고, 부담금은 부가가치 **【매출액-매입액】**에다가 세율 1.5%를 곱하여 산출된다.

- 공 제

- 기업 부가가치 부담금의 공제액은 기업의 외형금액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외형금액별 공제금액

외형금액 (유로)	공제금액 (유로)
500,000 이하	0
500,001 ~ 3,000,000	$0.5\% \times (\text{외형금액} - 500,000) / 2,500,000$
3,000,001 ~ 10,000,000	$0.5\% + 0.9\% \times (\text{외형금액} - 3,000,000) / 7,000,000$
10,000,001 ~ 50,000,000	$1.4\% + 0.1\% \times (\text{외형금액} - 10,000,000) / 40,000,000$
50,000,001 이상	1.5%

- 한편, 외형금액이 2,000,000 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1,000 유로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 최고상한

- 기업 부가가치 부담금 최고 상한 세율은 부가가치의 3%이다.

○ 기타 세목

- 기타 세목은 특정 목적을 위해 징수하는 목적세의 성격을 가진 세금을 말하며, 특별장비세,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에 부가되는 부가세, 기업 토지 부담금 부가세, 오물수거세, 청소세, 공가세, 기업시설세 등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율 결정권 및 세목별 세율

프랑스 지방세 세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규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투표로 결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서 탄력세율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세율결정 권한은 1980년 1월 10일 법령에 따라 제정된 지방직접세 조정법에 따라서 주민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세,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적용되었다. 위 세목 이외의 세목의 세율은 국가가 정한 세율을 적용하거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우리나라의 탄력세율처럼, 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 기본원칙

- 각 지방자치단체는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일정한 법정 상한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각 지방단체사이의 동일세목에 대한 세율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따라서 주민세,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세 및 지역경제기여금에 대한 「세수입의 기대총액」을 결정할 때, 국가가 정한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 세율 인상의 법정 상한선

-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세,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 및 사업소세의 세율 상한선은 첫째, 한 데파르트망 내에서 전년도에 적용된 꼬뮌 전체의 평균 세율을 2.5배 이상 초과할 수 없고 둘째, 동시에 전년도에 적용되었던 프랑스 평균세율을 2.5배 이상(단, CFE는2배)을 초과할 수 없다.
-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입의 확보를 위해 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여, 국민의 세부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수입 격차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투표로 결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

○ 세목간 세율변동의 제한

- 각 지방자치단체는 4대 세목(주민세,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세, 지역경제기여금)의 비율적 변동 또는 차별적 변동 중 하나를 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첫째, 비율적 변동이란 위 4대 세목의 세율은 법적 상한선을 준수하면서 동일하게 상향조정(또는 하향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둘째, 차별적 변동이란 위 4대 세목의 세율을 각기 다른 비율로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지만, 법정상한선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세 세율인상시, 건축물이 없는 토지세의 세율이 인하되고 동시에 지역경제기여금의 세율도 인하되어야만 가능하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세 세율의 인상은 법정 상한선 내에서는 자유롭지만, 인하의 경우에는 지역경제기여금의 인하가 선행되어야 한다.
-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 세율의 인상은 법정 상한선을 준수하면서 인상할 수 있지만, 주민세 세율의 인상폭과 동일하여야 하며, 세율의 인하는 지역경제기여금의 인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 지역경제부담금의 인상은 법정상한선을 준수하면서, 주민세 세율의 인상폭과 동일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세와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 인상율과 같은 비율로 인상되어야 하되, 인하는 다른 제약 조건이 없다.

○ 과세물건의 평가와 지적제도

지방세 과세물건의 평가는 지적(Cadastre, 地籍)상 평가 금액으로 한다. 한편, 지적은 토지대장과 건물대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축물의 위치, 건물번호, 토지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등록하고 있다.

-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가치 평가
 -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납세자를 대표하는 6-8명의 위원(거주인이 2,000명 이하의 꼬뮈

의 경우)으로 구성된 「꼬뮌의 직접세 위원회」의 협의로 시작된다. 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류작업은 4가지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분류가 이뤄진 뒤에는 지역가치를 결정하고 평가 초안을 만든 뒤 확정하여 지적에 기록된다.

- 토지임대가치 평가는 우선 토지의 지역가치를 평가한 뒤 가격의 결정 및 검증을 거쳐 최종 평가금액을 결정한다. 지역가치는 꼬뮌에 위치한 해당 토지의 임대증서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지역가치를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 가치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거나 직접 감정을 통해서 결정한다.
- 위와 같이 평가된 금액은 과세관청에 의해 확정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해당 꼬뮌에서 결정한 평가액에 동의를 하지 못할 경우, 도의 직접세 위원회가 심의하고 판단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절차는 2개월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가 임대가치의 최종 결정기관이 된다. 이와 같이 결정된 임대가치는 토지대장(Cadastre)에 기록된다.

-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평가

- 거주용 주택 및 사업용 건물은 평가를 하려는 주택이 소재하는 꼬뮌에서 비교가 가능한 「기준주택」의 가격과 비교를 하여 결정된다.
- 기준주택의 임대가치는 과세관청에 의해 해당 주택의 임대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산출된다.
-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평가는 해당 건물의 임대가치로 결정된다. 이는 해당 건물을 임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의미한다.
- 아울러 산업용 건물의 평가는 해당 자산이 해당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같은 평가는 납세자가 세무신고할 때 등기소(service du Cadastre)에 해당 물건과 평가액이 등기된다.

4. 방문기관 질의 응답

질의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분야 납세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는 납세자 권리보장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위원회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프랑스의 위원회제도는 프랑스가 행정국가체제의 출발과 그 시작을 같이 한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대립적 관계에 있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며 때로는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질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지방세 세율을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법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 지방세 세율의 자율성이 적음. 프랑스의 지방세는 실제로 세율의 결정권이 지방세 있는지와 어떠한 세수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지방세 세율은 국가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세율의 자치결정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프랑스의 지방세 제도는 법률에 의해서만 지방세의 세목이 결정되는데 4대 직접 지방세인 기건축물토지세, 미건축물토지세, 거주세, 사업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 프랑스는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세수확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이 줄어드는 구조임
질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주택소유자에게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주택 거주자에게도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에서는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민세(주거세)를 과세한다. 정부가 각 주택의 임대가치를 평가해 과세표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주택을 소유보다는 거주 개념이 강함.

<p>질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지방세는 광역자치단체에 6개 세목과 기초자치단체에 5개 세목이 있음. 프랑스의 지방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
<p>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지방세는 주민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세,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 기업토지 부담금과 기업부가가치 부담금에 각각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지역경제기여금 제도와 - 오물수거세, 특별장비세, 청소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징수하는 세목으로 구성됨.
<p>질의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한국에는 관광자원에 부과되고 있는 지방세는 없음. • 프랑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관광국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광관련 세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세목이 있는지?
<p>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는 세계 최대 관광지 가운데 하나이며, 1년에 수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단일 세율의 여행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세율인상 및 누진체계를 도입하고 있음. - 2015년부터 여행세를 비례세에서 누진세로 전환하였고, 추가적으로 10%의 데파르트망세가 부과되고 있음.
<p>질의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과 관련하여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세자의 조세저항은 없는지와 • 한국 지방세의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약 1~2%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는데 파리의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율도 높은지?
<p>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조세 부담률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실적과 연금이 연계되어 있어 세금을 납부한 만큼 혜택이 주어져 주민들이 비교적 세금을 잘 납부하는 편이며, 교육과 연금, 의료 등 주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잘 쓰이는지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한국과 마찬가지로 파리도 건물과 토지에 부과하는 세목이 있으며, 세율은 20%이상으로 한국의 세율보다 훨씬 높다는 생각이 듦.

5. 프랑스 지방세 제도 시사점

프랑스와 한국의 지방세 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양 국가는 모두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고 지방세 세원이 대부분 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방세 제도의 변화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 조세공평주의에 부합

- 프랑스 지방세 중 주민세는 해당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가치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이는 프랑스 주택 소유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굳이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거주개념이 강한 프랑스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자에 한해 과세함으로써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임대형식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 변칙적으로 고액 전세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등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주거 추세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지방세가 어떻게 과세를 하여야 공평과세가 되는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얼마인지를 공평과세 차원에서 재검토 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프랑스의 임대가치를 기준으로 한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은 합리적이면서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세율결정권을 보장

- 프랑스 지방세 세율은 국가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그들의 대표자)이 투표로 결정한다. 이른바 세율의 자치결정권이 실제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지방세목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보다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드물다.

- 프랑스 지방세 세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감안하여 세입을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 물론 일정한 상한선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세율 결정권도 확보되어 있으며 주민의 의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세수입과 연계하여 지방제정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입확보 노력을 기울일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예산지원도 삭감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유도 및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세율의 결정권을 국가로부터 해당 주민에게 이전 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분별한 감세는 현재와 같이 지방교부금 제도와 연동시켜, 감세를 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 등을 감세한 만큼 감액 조정을 하여 보완할 수 있다.

○ 납세자 권리보장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위원회 제도

- 프랑스의 위원회 제도는 프랑스가 행정국가체제의 출발과 그 시작을 같이 한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대립적 관계에 있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며 때로는 법률적인 판단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로 인해 납세자의 불만을 사전에 조정과 해결이 되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안을 결정하여 법률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위원회는 많지 않다. 특히 조세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자문의 수준에서 한 단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우리나라 행정체계상 이러한 위원회를 사법부의 판사가 주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면 납세자의 권리보장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조세불복 신청은 행정부 안에서 스스로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연수 사진 》



이탈리아

2팀

이탈리아 지방세 제도 연구

1. 연수개요

- 방문일자 : 2017. 5. 28.(일)
- 방문목적
 - 이탈리아의 지방세 제도 및 운영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점과 접목 가능한 부분 등에 대한 현지토론으로 지방세제 이해증진
- 방 문 자 : 전남도청 및 22개시군 지방세 담당자(38명)
- 방문지역 : 이탈리아 밀라노, 베네치아

2. 일반현황

- 이탈리아 개요
 - 국 명 : 이탈리아 공화국(The Italian Republic)
 - 면 적 : 301,340km²(한반도의 약1.5배) 세계72위
 - 위 치 : 유럽중남부, 지중해 연안 이탈리아 반도
 - 인 구 : 6,200만명(2016. 7월 현재)
 - 민 족 : 이탈리아인
 - 북 부 : 프랑스계, 오스트리아계, 슬라브계
 - 남 부 : 알바니아계, 그리스계 등 소수 거주
 - 언 어 : 이탈리아어
 - 기 후 : 연평균 기온은 15℃, 연 강우량은 600~1,000mm
 - 사계절 구분이 확실하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후와 비슷하나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에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오며 1년 내내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로 특히 7~8월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강함.
 - 수 도 : 로마
 - 종 교 : 가톨릭교(80%), 기타(20% 이슬람교 등)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행정단위 : 15개 주와 5개 자치지역
 - 경 제 : GDP : 1조 8,525억\$ 세계8위('16년 IMF기준)
 - GNP : 3만 294\$ 세계27위('16년 IMF기준)

○ 이탈리아 행정구역

- 3단계 : 중앙, 20개 광역(regione 주), 110개 기초(provincia 현)

※ provincia가 안에는 수 많은 기초자치단체(comune)가 존재



광역	주현	비고
라치오	로마	※ 기초자치단체(comune) - 8,057개 기초자치단체
아브루초	라퀼라	
발레다오스타	아오스타	
폴리아	바리	
바실리카타	포텐차	
칼라브리아	카탄자로	
캄파니아	나폴리	
에밀리아로마냐	볼로냐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	트리에스테	
리구리아	제노바	
롬바르디아	밀라노	
마르케	안코나	
몰리세	캄포바소	
피에몬테	토리노	
사르데나	칼리아리	
시칠리아	팔레르모	
트렌티노알토아디제	트렌토	
토스카나	피렌체	
움브리아	페루자	
베네토	베네치아	

□ 주요 방문도시 소개

○ 이탈리아의 경제 중심지 밀라노

- 밀라노는 해발 122m의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의 주도로 19세기 후반에 발전하기 시작한 근대공업으로 현재에는 유럽 경제 시장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패션, 예술, 건축에 이르기까지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함. 뉴욕 런던 파리와 함께 세계 4대 패션도시로 유명한 밀라노는 패션뿐만 아니라 음식, 오페라,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두오모 성당과 유럽 오페라의 중심인 스칼라 극장,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로 유명함. 또한 밀라노의 중심가인 두오모 광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핑 거리로 일컬어지는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회랑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회랑은 거대한 아케이드로 전통있는 카페와 부띠끄가 늘어서 있어 밀라노만의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볼 수 있음.

○ 물의 도시 베네치아

- 베네치아는 바다로 이어지는 석호 위에 발달한 ‘물의 도시’로 역사 깊은 항구도시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임. 120여 개 섬과 그 섬들을 연결하는 170여 개 운하, 400여 개 다리로 이루어진 베네치아는 예부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동양과 서양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로 이탈리아 반도의 동쪽, 아드리아해의 끝에 위치하고 있음. 인공섬 위에 조성된 도시인데다 좁은 골목이 이어져 시내에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고 ‘바폴레토’라 불리는 수상 버스와 곤돌라, 수상택시가 베네치아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데 11세기부터 시민의 발이 되어 온 곤돌라는 이제 베네치아를 상징하는 명물이 되어 한 해 2천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는다고 함. 또한 베네치아의 구시가지는 지난 날의 공화국 번영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고 산마르코대성당·두칼레궁전·아카데미아 미술관 등은 미술·건축 예술의 보고로 알려져 있음.

3. 연수 내용

○ 세입예산 등

- 예산은 중앙정부 의존적이며, 세입비율은 중앙정부 69%, 주정부 24%, 지방정부 7%임
- 세출규모는 중앙정부 53%, 주정부 28%, 지방정부 19%임.
- 재정차이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교부금으로 운영
- 주정부세목은 자동차세로 탄력세율은 10%이내 조정 가능

○ 지방세 체납액 관리를 위한 제도

- 세무경찰을 운영하고 있어 강력한 징수 가능
 - ※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질·상습화되는 체납자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도 자치경찰 도입시 세무경찰제 도입 검토 필요성을 느낌.

○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상생과 견제 제도

- 예산통제, 재정감사, 지방세법 컨트롤
- 2000년초부터는 주정부 자율적 예산집행이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중앙정부 통제 기능이 강화됨

○ 이탈리아의 조세체계

☞ 이탈리아 조세구조 : 직접세+간접세

- 직접세

- 개인소득세(IRE) : 이탈리아 영주자는 국내외 소득 전부에 대해 과세하고 비영주자는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법인소득세(IRES) : 이탈리아 영주법인의 경우 국내외 소득 전부에 대해 과세하고, 비영주법인(본부가 해외에 소재한 이탈리아법인)의 경우는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법인소득세는 단일세율 33% 적용

- 생산활동 지방세(IRAP) : 각 지역(주)별로 소재하는 영주법인의 상주시 설을 통해 발생한 생산·매출액에 대해 과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IVA)

조세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귀속되며, 이탈리아 지역내에서 발생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 공급에 대해 부과. 통상 세율은 20%이며 제품 종류에 따라 4%, 10% 등의 일부 차등세율 적용

· 양도세

영업 및 고정자산 등에 대한 양도·이전·대여 계약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세율 및 과표는 계약 성격, 계약자에 따라 달리 적용 (4~15%). 아울러 별도의 등기세(1%) 및 저당세(2%)를 부과. 고정자산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기세, 저당세를 합쳐 129.11 유로(부가가치세 별도) 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 비유동자산에 대한 지방 재산세(ICD)

각 시별로 영주자이든 비영주자이든 해당 지역내에서 고정자산을 보유한 자에 대해 부과. 각 시는 세율을 0.04~0.07%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고 과표는 등기소가 정하는 고정자산의 유형과 등급별 추정가치를 합산

· 상속, 증여세

2001년에 폐지되었으며, 증여인과 특별관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증여는 양도세(등기세, 저당세 포함)를 부과

· 원천과세(배당세, 이자세, 로열티세)

▷ 배당세 : 이탈리아 법인에 대한 비실물 출자를 통해 배당을 받은 영주개인은 12.5%의 배당세를 원천징수

▷ 이자세 : 은행예금, 채권, 또는 유사한 증권 등을 통해 받는 이자 소득에 대해 27% 또는 12.5%의 이자세를 원천징수

▷ 로열티세 : 비영주인에게 지불된 로열티에 대해 30% 원천과세

○ 지방세 주요 세목별 과세 방법

- 지방사업세(IRAP)

- 주정부 지방세로 해당 지역에서 수행된 생산적 활동에 과세함.
- 납세의무자 : 개인사업자·예술가·전문직, 주식회사와 상기업, 파트너쉽, 농업인, 공공단체, 외국기업
- 과세표준 : 생산의 순가치로 하며 일시적인 의존적 작업이나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협동작업에서 얻은 소득은 과세 제외됨.
-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으며, 표준세율은 3.9%로 1% 범위 내에서 세율 변경 가능

- 단일기초지방세(IUC)

- 종전의 수정재산세(IMU), 오물수거 및 재활용세(TARI)와 기초지방행정 서비스세(TASI)를 통합한 것임

구 분	내 용
수정재산세(IM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대상 : 주택, 종신차용권(life tenancy), 상가, 농지, 나대지, 부동산의 영구적 이용권 등 · 세 율 : 0.46~0.7%(지자체가 결정) · 과세표준 : 부동산 가격에 일정한 계수를 곱하여 산출
오물수거 및 재활용세(TA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면적과 오물량에 따라 계산함.
기초지방행정서비스세(TA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단체의 서비스를 위한 재원 · 부동산 보유자와 점유자 모두 납부

※ 수정재산세(IMU)와 기초지방행정서비스세(TASI)를 합산한 세율은 10.6%를 초과할 수 없음.

- 지방개인소득세

- 국세인 개인소득세(IRPEF)에 부가하여 과세됨.
- 모든 소득에 대해 정률과세를 원칙으로 함.
- 주정부인 광역단체는 주정부 부가세로 징수하고, 기초단체는 기초 부가세로 징수함.
- 주정부 부가세의 표준세율은 0.9%이며, 조례에 따라 1.4%까지 세율을 인상할 수 있음.

4. 이탈리아 지방세 제도 시사점

○ 자주재원 확보와 재정건전성에 충실한 지방세 제도

- 이탈리아는 지방재원을 충실히 확보하기 위해 1989년 기초지방세인 사업·공예·전문직세(ICIAP)와 1993년에 기초지방세인 재산세(ICI)를 도입하였고, 1998년에는 복잡 다양했던 조세를 통폐합하여 주정부세인 지방사업세(IRAP)를 신설함으로써 재정의 분권화를 촉진시켰음. 획일적인 주정부 중심의 조세제도 보다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될 수 있는 지방세제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함에 큰 의의가 있음

○ 탄력적인 지방세 제도 운영 및 자체세원 발굴

- 기존의 재산세는 세율이 너무 높고 세부담의 형평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유럽재정 위기의 영향으로 2012년 6월에 재산세(ICI)는 수정재산세(IMU)로 전환, 거주주택인 1주택을 과세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조세 저항에 부딪히게 되자 이탈리아는 거주주택인 1주택에 대한 수정재산세(IMU)를 폐지하되, 별장이나 임대주택을 가진 경우는 과세를 유지하는 한편 각 지자체의 과세상한을 한도로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 하되 수정재산세(IMU)와 기초지방행정서비스세(TASD)를 합산한 세율은 10.6%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무분별한 세율 차등을 최소화함.
- 또한 이탈리아는 2011년 이후 외국인 대상의 여행자세(Tourist Tax)를 징수하는데 여행자세의 표준세율은 로마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기준으로 1박의 경우 4성급 및 5성급 호텔은 3유로, 그 외 숙박시설에 대해 2유로이며, 유스호스텔에 숙박하거나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에는 여행자세가 면세됨. 우리나라도 이탈리아처럼 소득수준 증가 및 여가활동 급증에 부응하여 지방공공서비스 수요 증가 요인인 숙박 및 여가활동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세제의 선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스 페 인

3팀

스페인 지방세 제도 연구

1. 연수개요

- 방문 일자 : 2017. 6. 2.(금) 09:30
- 방문 목적
 - 우리나라 비슷한 경제규모와 인구를 가진 국가로 남유럽 경제위기 과정에서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한 지방세 제도 운영 사례 조사
- 방 문 자 : 전남도청 및 22개 시군 지방세 담당자(37명)
- 방문 기관 : 마드리드 시청
- 내 용 : 스페인 지방세 구조와 특징, 지방세 체납징수절차

2. 일반현황

- 스페인 개요
 - 국 명 : 스페인 왕국(KINGDOM OF SPAIN)
 - 위 치 : 남서부유럽 이베리아 반도
 - 면 적 : 505,963km²(한반도의 2.5배, 남한 면적의 5배), 17개 자치주로 구성
 - 인 구 : 4,727만(2013. 3월 현재)
 - 민 족 : 라틴족(이베로인, 로마인, 켈트인, 게르만인, 아랍인의 혼혈)
 - 언 어 : 스페인어이나 지역마다 카탈루냐어, 갈리시아어, 바스크어 공용됨
 - 기 후 : 해안은 지중해성 기후이나 내륙은 대륙성 기후를 나타냄.
여름철 내륙은 고온건조 하나 북부해안지방은 높은 강우량을 나타내고 겨울은 우기가 잦고 낮은 일조량을 나타냄
 - 수 도 : 마드리드
 - 종 교 : 국민의 94%이상이 로마 카톨릭 신자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
 - 경 제 : GDP 1조3977억 달러 세계13위('12년 IMF기준), GNP 30,150 달러('12년 IMF기준)

○ 스페인 행정구역

- 3단계 : 중앙, 17개 자치지방(15개 광역, 2개 자치 시), 50개 주



자치 지방	자치 주	주도	자치 지방	자치 주	주도
마드리드	마드리드	마드리드	카탈루냐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카스티야 라 만 차	과달라하	과달라하		에이다	에이다
	사우다드레알	사우다드레알		지로나	지로나
	알바세테	알바세테		타라고나	타라고나
	쿠엥카	쿠엥카		사라고사	사라고사
안달루시아	톨레도	톨레도	아라곤	테루엘	테루엘
	그라나다	그라나다	우에스카	우에스카	
	말라가	말라가	에스트레 마 두 라	바다호스	바다호스
	세비야	세비야		카사레스	카사레스
	알메리아	알메리아	나바라	나바라	팜플로나
	우엘바	우엘바	바스크	기푸스코아	산세비스티안
	코르도바	코르도바		바스카야	빌바오
하예	하예	알라바		비토리아	
발렌시아	카티스	카디스	라리오하	라리오하	로그로뇨
	발렌시아	발렌시아	칸타브리아	칸타브리아	산탄테르
	알리칸테	알리칸테		아스투리아스	아스투리아스
	카스테욘	카스테욘	레온	레온	
폰테베드라	폰테베드라	바야돌리드	바야돌리드		
무르시아	무르시아	부르고스	부르고스		
갈리시아	라코루냐	라코루냐	카스티야 이 레 온	사모라	사모라
	루고	루고		살라망카	살라망카
	오렌세	오렌세		세고비아	세고비아
발레아레스 제도	발레아레스 제도	소리아		소리아	
카나리아	라스팔마스	라스팔마스		아빌라	아빌라
	산타크루스	산타크루스		팔렌시아	팔렌시아

□ 주요 방문도시 소개

○ 스페인 정치 문화의 중심지 마드리드

- 유럽의 국가들의 수도 중 가장 높은 고지대인 해발 646m에 자리하고 있는 고원도시로 고색창연한 건축물과 미술관, 박물관,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거리에는 옛날 모습이 곳곳에 남아 있음. 신시가지에는 현대적인 빌딩거리가 펼쳐지며 교외에는 공장과 고층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어 대도시의 활기를 느낄 수 있음. 특히 마드리드의 지하철은 매우 현대적이고 청결하게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매우 인상적임.

○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

-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북동부 지중해의 카탈루냐 지방의 중심도시로 스페인어가 아닌 카탈루냐어(프랑스어와 비슷)를 사용하고 스페인으로 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등 지역주의 의식이 매우 강함. 천재 화가 피카소와 천재 건축가 가우디를 배출한 명성에 걸맞게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도시임.

3. 연수 내용

스페인의 지방분권은 정치적 민주화의 산물로서 점진적인 정치적 타협을 거쳐 상당히 확대된 EU내에서도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형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와 인구를 가진 국가로 다른 어떤 선진국 사례보다도 한국의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스페인 지방세 구조

- 자치공동체의 지방세

- 스페인은 지방분권의 실질적 확대로 국가의 많은 자원들이 지방정부로 이양됨. 자치공동체는 국가가 자치공동체에게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양도한 조세수입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미미하나마 자치공동체별로 자체 조세 및 국세에 대한 부가세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조세수입의 측면에서는 국세의 양도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지만 자치공동체는 제도적으로는 자신의 조세를 결정하고 세율을 정하거나 특별 징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자치공동체의 조세체계]

일반체계		카나리아	특별체제	자치시	
양도국세					
부분 양도 : 개인소득세 (50%), 부가가치세 (50%), 제품특별세 (58%): 맥주, 와인 및 발효음료, 알콜 및 가공음료, 탄화수소, 담배업무	100% 양도 : 자산양도 및 인지세, 상속증여세, 자산세, 게임세 특정교통수단세, 특정 탄화수소 소매판매세, 전력세	자체 조세: 자치공동체 마다 재량적으로 설정	부가가치세 비적용, 특정 탄화수소 소매 판매세 및 담배 업무세가 없음. 카나리아 일반간접세 및 카나리아제도 에 서의 상품수입과 양 도에 대한 재량세	모든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 의 공공지출에 대해 국가에게 분담금 지불	자치공동체 채원조달시스템. 특별조세체제: 직접세 부과액의 50% 경정, 부가가치세는 비부과, 생산, 서비스 및 수입세 부과

※ 국가가 자치공동체에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양도한 조세

- ① 개인소득세(Impuesto sobre la Renta de las Personas Físicas)
- ② 자산세(Impuesto sobre el Patrimonio)
- ③ 상속증여세(Impuesto sobre Sucesiones y Donaciones)
- ④ 자산양도 및 인지세(Impuesto sobre Transmisiones Patrimoniales y Actos Jurídicos Documentados)
- ⑤ 게임세(Tributos sobre el Juego)
- ⑥ 부가가치세(Impuesto sobre el Valor Añadido)
- ⑦ 맥주세(Impuesto sobre la Cerveza)
- ⑧ 와인 및 발효음료세(Impuesto sobre el Vino y Bebidas Fermentadas)
- ⑨ 중간재세(Impuesto sobre Productos Intermedios)
- ⑩ 알콜 및 가공음료세(Impuesto sobre el Alcohol y Bebidas Derivadas)
- ⑪ 탄화수소세(Impuesto sobre Hidrocarburos)
- ⑫ 담배업무세(Impuesto sobre las Labores del Tabaco)
- ⑬ 전력세(Impuesto sobre la Electricidad)
- ⑭ 특정 교통수단 특별세(Impuesto Especial sobre Determinados Medios de Transporte)
- ⑮ 특정 탄화수소 소매판매세(Impuesto sobre las Ventas Minoristas de Determinados Hidrocarburos)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 헌법에서 규정된 스페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은 그 자신의 이해를 위한 자율성 원리와 자신의 세금과 국세의 배분을 통한 재정적 충분성 원리에 기반한다. 이러한 헌법적 원리들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시의회나 주의회는 조세체계에 관련된 입법을 할 수 있는 법적능력이 있음.

[지방자치체의 조세체계]

지방자치단체			주	
자체 조세	선택적 조세	양도 국세	자체 조세	양도 국세
부동산세 경제활동세 기계장치차량세	건설·설비 및 공사세 도시토지가치 증가세 특별세	75,000명 이상의 법적 인구, 주 또는 자치공동체의 수도: 개인소득세는 국가 정산부과액의 2.1336%, 부가가치세는 정산 징수액의 2.3266%, 맥주세, 와인 및 발효음료세, 중간재세, 알콜 및 가공음료세, 담배업무세 등은 확정 징수액의 2.9220%	경제활동세에 대한 부가세 특별세	개인소득세는 국가 정산 부과액의 1.2561%, 부가가치세는 정산 징수액의 1.3699%, 맥주세·와인 및 발효음료세·중간재세· 알콜 및 가공음료세·탄화수소 세·담배업무세 등은 정산 징수액의 1.7206%

- ※ 75,000명 이상의 법적 인구를 가진 주 또는 자치공동체의 수도인 지방자치체는 국세의 일정 부분을 양도받을 수 있음.
- ※ 지방자치체는 공공 수원으로부터의 물 공급, 공공도로 조명, 일반적 공공감독, 시민보호, 공공도로의 청결, 의무교육 수준의 교육 등의 서비스에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체는 자동정산체제로 세금을 요구할 수 있다.
- ※ 주는 양도된 조세에 관해 어떤 경우에도 관리, 정산, 징수 및 강제된 행위의 수정 등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없다.

○ 지방세의 주요 특징

- 지방세 가운데 단일세목으로 가장 높은 세수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세는 부동산세로 전체 지방세의 36.2%이며 특히 지방자치체의 경우 부동산세가 전체 조세수입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의 세목별 주요 특징]

세목	과세표준	세율 재량권	징수 및 관리
부동산세	토지 및 건물의 토지대장 등록가치	국가가 정한 최고 및 최저세율 한도내에서 지방자치체가 세율 설정	정산, 징수 및 행위 수정 등은 지방자치체들의 배타적 권한
경제활동세	산업, 상업 혹은 예술적 활동에 의해 발생된 이윤	국가에 의해 설정된 한계 내에서 지방자치체가 세율 설정	조세의 등록 구성, 경제활동의 자격부여, 부과액통보, 세금의 관리 등은 국세청, 국세청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위 통보는 지방자치체나 국가행정에 의해 실행, 정산 및 징수 등의 관리 및 행위의 수정은 지방자치체
기계장치차량세	공공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는 등기부 등록 차량	국가가 결정한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체는 재량권은 없지만 인구규모에 따라 세율을 바꿀 수는 있고 최저세율을 2배까지 인상 가능	관리, 정산, 조사 및 징수, 조세관리 등은 차량 운행을 허가하는 주거지가 있는 지방자치체가 담당
건설·설비 및 공사세 (선택적 조세)	사전적으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한 건설, 설비, 공사의 실질 비용	최소한의 기준율은 법에 의해 설정되며 지자체는 최고 4%까지 세율 인상 가능	지방자치체가 담당
도시토지가치 증가세 (선택적 조세)	도시적 성격을 가지는 토지의 가치증가	국가가 정한 한계 내에서 지방자치체가 세율 설정	지방자치체가 담당
특별세 (선택적 조세)	지방공공사업의 실현, 공공서비스의 설립이나 확대에 의한 이득	지방자치체가 부과협정 및 관리협정에 근거해 부과액 결정	부과협정 및 관리협정에 따라 공사의 실행, 서비스의 설립이나 확대를 담당하는 기관

○ 스페인의 지방재정

- 이전 자원

- 국가 또는 지역조세의 공유, 국가조세의 경우 몫은 자치체의 크기에 의존
- 지역(광역), 국가 등의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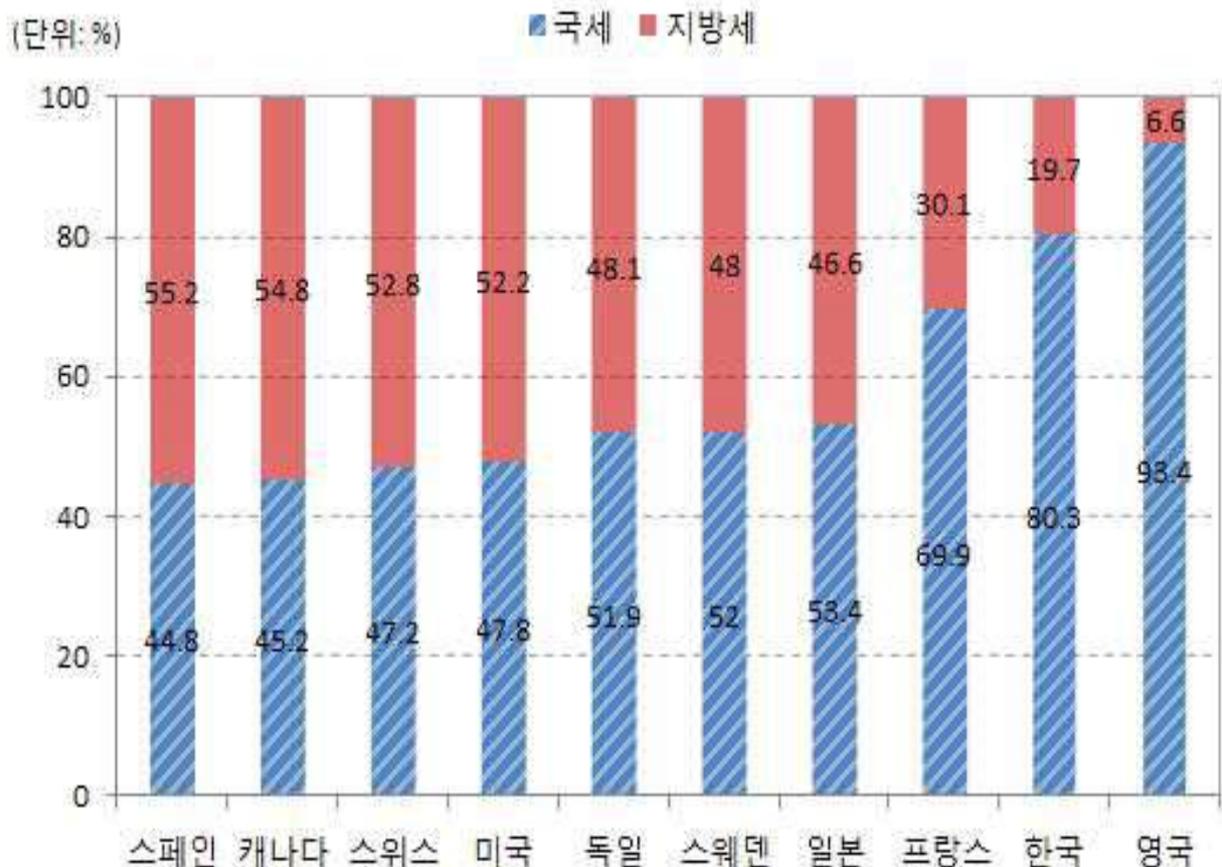
- 자체 자원

- 자체 조세: 부동산세, 경제활동세, 기계장치차량세
- 자치공동체나 지방기관들의 조세에 대한 부가세
- 기타: 공공요금, 벌금 및 과태료 등

- 특징

- 지방세 비중이 약 55%로서 OECD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재정적 분권을 이룸
-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은 총수입의 5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세 중심으로 74.6%가 직접세에 해당한다고 함.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



○ 스페인의 지방세 관련기구

- 재정 및 공공행정부(Ministerio de Hacienda y Administraciones Publicas)
 - 스페인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발전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세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 중앙정부 부처인 재정 및 공공행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조세 및 재정정책협력에 대한 책임을 전담하고 있다. 산하 국세청은 국세와 관세를 담당한다. 자치와 지방협력총국(Secretaria General de coordinacion Autonómica y Local)은 자치공동체 및 자치시에 중앙과 협력하는 핵심조직이다.
- 지방행정국가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Administracion Local)
 - 국가 일반행정과 지방행정의 협력을 위한 상설기관으로서 본회, 지방행정협력소위원회, 경제·재정·조세체제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 자치단체를 위한 권한의 배분과 위임, 지방행정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예산과 이전의 배분, 지방재정의 국세에의 참여, 지방행정에 영향을 주는 국가 일반예산의 예측 등에 대해 정부에게 제안을 한다.
- 자치공동체 조세재정정책위원회(Consejo de Política y Financiera de las Comunidades Autonomas)
 - 자치공동체와 국가 재정당국의 조세 및 재정적 협력을 조정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 조세관리의 방향과 협력을 위한 상급위원회(CSDCGT)
 - 국가의 조세행정과 자치공동체 및 자치시의 조세행정의 협력을 위한 조직으로 이양된 조세의 관리를 조정하는 책임을 진다.
- 조세관리의 방향과 협력을 위한 영토위원회(CTDCGT)
 - 국가 재정당국, 자치공동체 및 자치시들이 각각의 영토적 범위에서 양도된 조세 관리에 대하여 협력하기 위한 조직이다.
- 스페인 지방자치체와 주 연합(FEMP)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촉진과 방아, 다른 공공행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이해 대표 및 방어, 지방에 대한 정부프로그램 관리 등을 위한 자치단체 연합 조직이다.

- 일반체제 중재회의(Junta Arbitral de Régimen Común)

- 국세청과 하나 또는 다수의 자치공동체 사이, 또는 자치공동체 사이 발생하는 갈등의 심의와 해결을 위한 기구. 중재회의는 양도된 조세의 관리, 정산, 징수 및 감독과 관련하여 접속점(punto de conexión)을 적용하고 이를 통한 합의 도출한다.

○ 스페인의 지방세 체납징수절차

- 근거법령 : 조세기본법(Ley 58/2003, de 17 de diciembre, General Tributaria)

- 절차 : 독촉 → 압류 → 압류재화의 양도(경매)

- 압류되는 재화의 순서: ① 현금 또는 신용기관의 계좌 ②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출금, 어음, 채권 및 권리 ③ 급여, 연금 ④ 부동산 ⑤ 모든 종류의 이자와 소득 ⑥ 상업 및 산업 건물 ⑦ 귀금속, 천연 보석, 보석, 금은세공품, 골동품 ⑧ 동산 및 가축 ⑨ 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출금, 어음, 채권 및 권리 등(동일한 효율성과 속도로 부채의 현금화를 보장하는 재화라면 압류 순서를 바꿀 수 있음)
- 동산에 대한 압류의 경우 조세당국은 법에 따라 창고에 동산을 예치할 수 있음. 상업 또는 산업 건물 및 기업의 권리 구성요소나 재화의 역류가 납세의무자의 지불능력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법적으로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사업의 관리를 위해 공무원을 관리자로 임명함.
- 압류재화의 양도는 경매를 통해 시행. 독촉 절차는 경매대상이 공공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일 경우 경매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 절차는 밟지 않음. 조세 당국은 조세부채의 정산이 끝날 때까지 독촉 절차 진행 동안 압류재산과 권리의 양도를 진행시킬 수 없으나 촉박한 가치 손실의 위험이 있는 보존하기 어려운 재화나 납세의무자가 그의 양도를 서두르는 경우는 예외임.

4. 방문기관 질의 응답 주요내용

질의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지방세는 체납 가산금이 기본 3%, 본세 30만원이상의 경우 가산금 3% 외에 매월 증가산금 0.2%가 부과된다. 스페인의 가산금의 적용과 가산금 적용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나?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의 가산금 제도는 3천유로 미만 경미한 경우, 이중장부 등에 의한 세금 포탈 등의 탈루 금액별 중급, 심각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기 case by case 방식으로 운영된다. - 또한 12만유로 상당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5만유로 상당 사회보장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5년의 구금형이 있고 실제로 당사자간 합의로 벌금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 형평성 문제는 case by case 적용 방식으로 획일적 운영보다 평등하다고 본다
질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지방세는 지역마다 세수차이가 많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지방세가 많지 않는 자치구는 특별세 명목으로 더 많이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지역적 불만은 없는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으로 불공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치구를 운영하기 위해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담세력이 적은 사람은 세율이 낮은 지역에서 거주하려는 경향이 있고 담세력이 충분한 사람은 높은 세 부담을 감수하고서도 세율이 높은 도시에 거주하려고 한다. - 지역적으로 동일 물건에 대한 특별세가 달라 세금 납부에 있어 편법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최근 지역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문제가 정치적으로 대두하였으나 오히려 지역에서 원치 않는 경향이 있으며, 많은 세금을 내는 지역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그 지역에서 거주하며 그에 대한 서비스를 누리길 원한다.
질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는 강제징수 방법으로 재산의 압류하여 공매하는 제도가 있다. 스페인의 강제 징수 방법은 어떠한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의 경우도 재산의 압류, 공매하는 강제징수 방식이 있으며, 가택수색에 의한 강제징수도 있다. 이 경우 기본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치품의 경우에 한해 강제징수 한다. - 그러나 체납에서 강제징수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문제다. 대부분 이 기간 동안 재산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다.
질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지방세는 종교시설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여 주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는 어떠한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의 경우도 종교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부과는 없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소득신고시에 본인 소득의 0.7%를 성당에 기부하곤 한다. 심일조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 - 스페인의 종교시설의 입장료는 그 시설의 유지비 명목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국민의 76%가 카톨릭 신자이며 카톨릭에는 정부지원 제도가 있다.

질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지방세는 부동산, 차량, 주소지와 관련된 주민세,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 인허가 관련 면허세 등이 있다. 스페인의 지방세 구성에 관해 설명해 줄 수 있나?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에 관한 스페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그 목적으로 하며, 지방재정은 다음의 세 그룹으로 나뉜다 : 비조세수입원, 조세수입원, 국고출연금. - 그중 조세수입원은 지방세 재원이라면 5대 조세로 의무세인 부동산세, 경제활동세, 자동차세, 임의세인 건설, 설비 및 공사세, 토지증치세가 있다.
질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도 지방세로서 스페인의 부동산세, 자동차세와 비슷한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 스페인의 건설, 설비 및 공사세는 우리 지방세에는 없는데 어떠한 세금인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설비 및 공사에 관한 과세는 해당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건설, 설비 및 공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세율은 4%미만이다. - 이 경우 어떤 형태의 작업이든 간에 그 공사나 도시정비에 관한 적절한 인허가가 요구된다. 건설, 설비 및 공사와 관련하여, 그 공사나 도시정비에 관한 인허가 취득과의 관련은 다음과 같다 - 과세는 해당 공사나 도시정비에 대한 인•허가 취득 유무와는 상관없이, 건설, 설비 또는 공사가 시행될 경우 발생하고 세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시정부가 바로 해당 공사나 도시정비에 관해 인허가를 발급하는 기관이 된다. - 건설, 설비 및 공사에 대한 과세를 분석한 결과 알 수 있는 것은, 도시정비에 관한 인허가를 취득한 후 세금을 부과한 경우, 이중과세의 부담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본 과세는 두 가지 성격을 띄는데, 인허가 제도는 공사가 필요한 조건들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정부가 확인할 목적으로 만든 장치일 뿐, 주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지방기관의 행정업무 이행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만 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이 그 하나다(1983년 3월 7일, STS). 다른 하나는, 공사 자체에 대한 과세만 발생한다는 점이다. 결국, 건설, 설비 및 공사에 대한 세금은 완전히 상이한 두 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질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거래에 대해 거래비용이나 취득비용을 과표로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토지 증가에 대해 토지증치세라고 있던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치증가세는 동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제한이나 부동산권리이전에 따른 토지재산의 가치 증가분에 따라 세율을 매기는 직접세이며, 시정부가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임의세다. 토지 증치분을 과세로 적용하는 시정부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시정부도 있다. - 소유권 이전이나 토지 재산권양도를 통해 반영된 납세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율을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직접세이고, 과세대상은 도시 내 토지다. - 1년 이상 20년 미만 내에 발생한 토지의 자연증가분에 대해 세율을 매기며, 토지측량가에 대한 세율이다.
질의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최근 미세먼지 증가 문제가 대두되면서 경유차에 대한 증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스페인에 자동차세는 환경관련 증세나 감세가 있는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다. 자동차세에서 환경 관련 감면이 있으며 50%에서 75%로 증가 되었다.

질의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이라는 법으로 규정되어 지방정부가 정할 수 없다. 스페인의 과세율의 기준은 어떤 기관이 정하는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기본법 제 10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조세를 정하고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31조 3항에 의거하여 “법에 의거하여 개인교부금만 정할 수 있다”고 제한하며, 제 133조 1항에 의거하여 “국가의 조세는 법률을 통해서만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부과와 그 과세조건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관은 국가다. - 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고, 과세조건을 정할 수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정하거나 부과하는 것을 비호할 수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조세를 정하거나 부과할 자치권이 없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법률에 의거하여 임의세를 부과하거나 아니할 조세권한을 가진다. 국가 법률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의무세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요구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법률이 정하는 기간 및 조건 내에서, 의무세 뿐만 아니라 임의세의 조정을 통해 조세수입원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재정법 비준 후, 지방세를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질의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에서 면세나 감세에 관해 새로 법률이 제정된 사실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세목에 대해 어떤 내용의 감면인지 그리고 감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달라?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별로 최근 새로이 생기거나 변경된 감면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세: 대가족의 경우 90%까지 감면한다 2) 경제활동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경제활동을 개시한 첫 2년 동안 백만 유로(Euro)의 송장을 작성한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하여 면세, 두 번의 면세혜택 이후 5년 동안 새로운 사업을 한 경우 50%까지 감면, 고용창출을 이룬 경우 50%까지 감면, - 시세(市稅)를 납부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세액의 50~100%까지 감면하고 있다 - 폐열발전시스템이나 재생에너지이용시설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한 경우 - 시립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부지나 시설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또는 그 이후에, 산업활동을 시작한 경우 3) 자동차세: 환경 관련 감면범위가 50%에서 75%로 증가 4) 건설, 설비 및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에너지 소비를 위한 태양열에너지나 태양전기에너지 활용시스템을 갖추고 이루어지는 건설, 설비 또는 공사일 경우, 95%까지 감면하고 있으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조성계획과 관련된 건설, 설비 또는 공사일 경우, 50%까지 감면, - 공공주택과 관련된 건설, 설비 또는 공사일 경우, 50%까지 감면 - 장애인의 접근 용이성과 거주 편의를 충족시키는 건설, 설비 또는 공사일 경우, 90%까지 감면한다

5. 스페인 지방세 제도 시사점

○ 각 지역의 특수성과 발전 수준을 고려한 지방세 제도

- 스페인은 일반체제 자치공동체, 특별체제 자치공동체, 자치시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체계를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조세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방자치체의 지방세도 모든 지방세를 획일적으로 부과하기보다 선택적 조세체계의 추가적 도입과 지방자치체 상황을 고려한 국세의 부분적 양도도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역들이 행정적 경계를 넘어 단일한 언어와 공동의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에 비해 지역적 다양성이나 지리적 분산성이 크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적 격차와 성장 잠재력의 차이는 존재함. 따라서 획일적인 지방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스페인과 같이 선택적 조세체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정부 재원확대

- 스페인은 지방분권의 진전에 따라 국세의 절반을 지방정부로 양도하였음. 지방분권의 확대는 지방사무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원확대는 불가피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면서도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20% 수준 밖에 되지 않음. 교부세 제도가 부분적으로는 공동세에 기초한 재원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교부율의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기 보다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우리의 경우 국세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몫으로 되어 있고 사무는 점점 더 지방으로 이양되지만 세원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따라서 스페인만큼의 국세 양도는 어렵더라도 국세 공유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지방세의 선택적 조세와 세율 재량권

- 완전한 연방제 국가가 아닌 이상 지방정부의 권한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및 관리는 불가피한 면이 있음. 스페인의 경우 지방세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에 기초한 자치와 자율을 기본 원리로 하여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최종 권한을 가지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결정 및 징수에 대한 재량권을 확보하고 있음.
- 이처럼 국가가 모든 지자체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지방세목을 법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세목별 세율 폭을 규정하면, 지자체는 자신에게 맞는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세율재량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세목을 신설하고 세율을 결정하도록 권한이 있는 스페인의 지방세 제도는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중앙과 지방의 동반자적 관계지향의 다양한 협력기구 상설 운영

- 스페인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동반자적 관계를 지향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기구를 상설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의사결정에서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의 정부 구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마저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청취하거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모른 채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과 정책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상설협력기구의 역할이 중요함.

《 연수 사진 》



스페인의 지방세 제도 설명장면 1



스페인의 지방세 제도 설명장면 2



스페인의 지방세 제도 질의응답 1



스페인의 지방세 제도 질의응답 2



질의 응답후 기념촬영 장면 1



질의 응답후 기념촬영 장면 2

1. 연수개요

- 방문 일자 : 2017. 5. 27.
- 방문 목적 : 경제규모 세계 20위인 스위스의 지방정부 조세부와 자율 결정권과 그에 따른 지방정부 간 조세 경쟁 사례
- 내 용 : 스위스 조세 제도에 대한 자유 토론

2. 일반현황

○ 스위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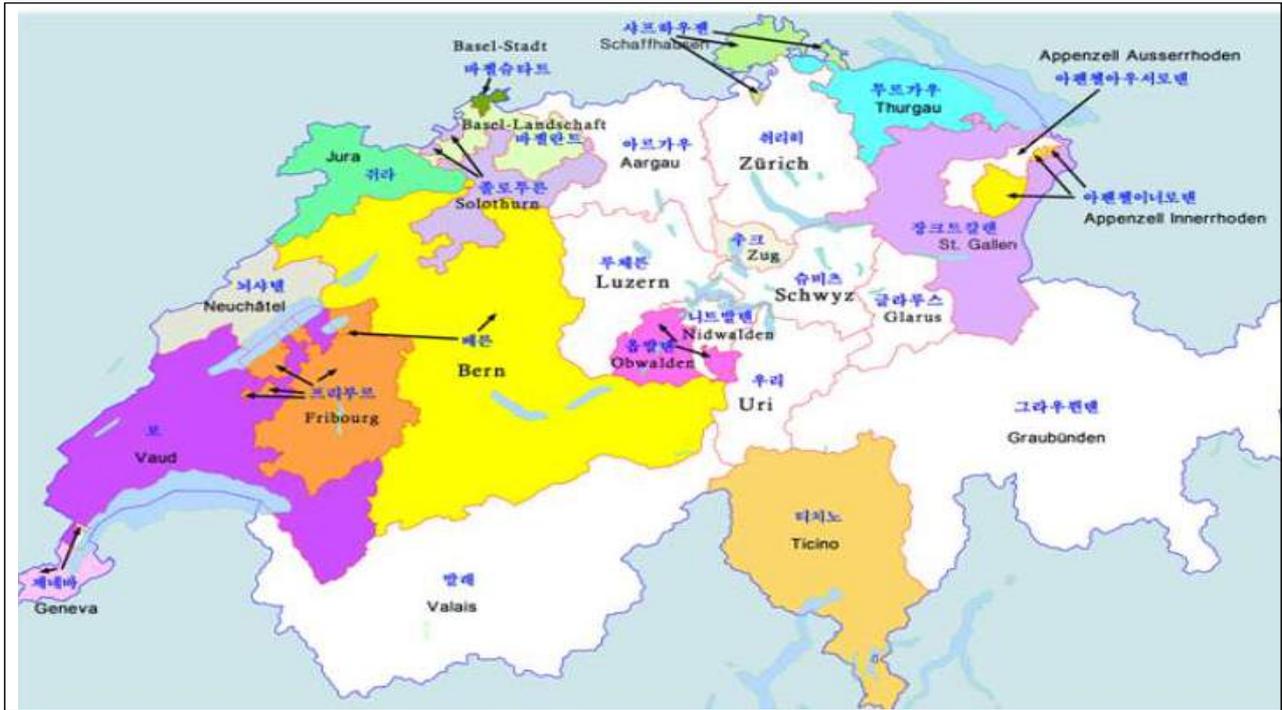
- 위 치 : 유럽 중부 내륙, 동경 8° 00', 북위 47° 00'
- 수 도 : 베른
- 인 구 : 818만명(2016년, 세계 98위)
- 면 적 : 41,277km²(대한민국의 약 2/5, 세계 136위)
- 언 어 :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 종 교 : 로마가톨릭교(41.8%), 개신교(35.3%), 이슬람교(4.3%)
- 기 후 : 위도와 해발고도가 높지만 기후는 온화한 편.
- 사회와 문화 : GDP 6,625억\$(세계 20위)
 - 지하자원이 부족하여 원자재를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제구조이므로 외국의 경기변동에 큰 영향. 알프스산맥과 수많은 자연호수로 이루어져 관광자원과 수력자원이 풍부하며, 기계·화학·금속·약품공업 중심의 고도 공업국으로 발전. 2015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6757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8687달러임.
 - 스위스식 회의제의 연방공화제, 의회는 양원제로, 임기 4년의 상원(46석)과 하원(200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정당은 사민당(SP), 급진민주당(FDP), 기독교민주인민당(CVP), 인민당(SVP) 등임

○ 스위스 행정구역

- 스위스는 26개의 칸톤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다

※ 칸톤 : 독일어: Kanton, 프랑스어: Canton, 이탈리아어: Cantone

- 연방정부(중앙정부), 26개 칸톤(광역), 2,400개 게마인데



광역(칸톤)	주도	기초 수	광역	주도	기초 수
베른	베른	399	샤프하우젠	샤프하우젠	34
취리히	취리히	171	아펜첼아우서로덴	헤지라우	20
루체른	루체른	107	아펜첼이너로덴	아펜첼	6
우리	알트도르프	20	장크트갈렌	장크트갈렌	90
슈비츠	슈비츠	30	그라우뷘덴	쿠어	211
옵발덴	자르넨	7	아르가우	아라우	232
니트발덴	슈탄스	11	투르가우	프라우엔펠트	80
글라투스	글라투스	28	티치노	벨린초나	244
추크	추크	11	보오드	로잔	382
프리부르	프리부르	242	발레	시옹	160
졸로투른	졸로투른	126	네샤틀	네샤틀	62
바젤슈타트	바젤	3	제네바	제네바	45
바젤란트	리스탈	86	쥐리	들레몽	83

□ 주요 방문지 소개

○ 융프라우를 오르기 위한 관문, 인터라켄(Interlaken)

- 아름다운 호수의 도시, 인터라켄이란 툰(Thun) 호수와 브리엔츠(Brienzi) 호수 사이에 자리하고 있음. 스위스 최고의 관광지이자 알프스의 3봉인 아이거, 뮌히, 융프라우가 나란히 있는 베르너 오버란트로 올라가는 관문으로 고도는 569m.

○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의 마루 융프라우요흐(Jungfrauoch)

- 유럽의 지붕인 융프라우 정상은 융프라우요흐(Jungfrauoch)라 부르며 처녀를 뜻하는 융프라우(Jungfrau)와 봉우리를 뜻하는 요흐(Joch)의 합성어임. 융프라우요흐는 높이 3,454m에 이르며 눈으로 덮인 산봉우리와 그림같은 호수가 몹시도 아름다운 곳임. 융프라우요흐를 오르는 톱니바퀴기차는 14년에 걸쳐 아이거와 뮌히를 관통하는 터널 작업으로 완성됨. 얼음궁전, 스팅크스 테라스를 관광할 수 있다.
- 융프라우 철도(Jungfrau railway)는 클라이네 샤이덱에서 융프라우까지 9.3km를 달리는 산악 터널열차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의 손만으로 1912년에 삽과 곡괭이를 사용하여 암반을 뚫어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금의 토목공법으로도 어려운 일을 1900년대에 완성한 것이다.

3. 연수내용

스위스는 칸톤과 지방자치를 통하여 아래에서 위로 혁신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음. 1948년 스위스 연방이 출범한 이래 칸톤은 각각 독자적인 세법체제를 갖추고 있음. 칸톤 간의 조세경쟁을 통해서 주민과 기업을 유치하는 입지경쟁을 하고 있고 칸톤 혹은 게마인데에 따라 세목과 세율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세목과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투표 내지 주민투표를 통하여 국민들이 깊이 관여를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법과 지방재정조정 등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스위스에서는 지방마다 지방세 체제를 달리하고 있어 지방세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스위스의 정부 체제

스위스는 26개의 칸톤(Kanton)으로 구성되는 연방국가임. 스위스 연방 헌법 제1조는 스위스 연방¹⁾은 스위스 국민과 26개의 칸톤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스위스에는 약 2,4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가 있음. 칸톤은 스위스 연방을 이루는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스위스의 정치 체제는 지방분권적 연방국가, 직접 민주제, 회의체 정부, 양원제 국회 등을 특징으로 함.

[26개 칸톤과 그 소재지(괄호 속 숫자는 연방 가입연도)]



자료출처 : <http://www.swissworld.org/media/political_system_2011/>

1) 스위스의 약칭으로 쓰이는 CH는 공식적인 라틴어 표기인 “Confoederatio Helvetica”에서 유래. “Confoederatio”는 연방을 의미하고, “Helvetica”는 약 2,000년 전에 오늘날의 스위스 지역에 정착한 헬베티족(Helvetier)을 의미.

[연방과 칸톤, 게마인데의 업무 개관]

연방 (연방헌법의 근거)	칸톤 (칸톤헌법에 근거)	게마인데 (칸톤헌법과 칸톤법률에 근거)
- 연방조직	- 칸톤의 조직(헌법, 국가, 문장(紋章))	- 교육(유치원과초등학교)
- 외교	- 경계를 넘는 협력사업	- 폐기물 관리
- 군대와 국방	- 경찰	- 게마인데 도로
- 국도(고속도로)	- 국가와 종교관계	- 지역인프라
- 핵에너지	- 문화	- 게마인데 경찰
- 우편과 전화	- 공공보건	- 공간계획
- 금융정책	- 칸톤국도	- 시민권
- 사회안전(연금, 장애인)	- 산림, 물관리, 자연자원	- 게마인데세
- 민법, 형법	- 교육(고등학교와 대학)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환경보호	
- 관세	- 자연보호, 문화재 보호	
- 교육(공과대학)	- 시민권	
- 에너지 정책	- 칸톤세	
- 공간계획의 원칙		
- 환경보호		
- 시민권		
- 연방세		

○ 스위스의 지방제도

- 칸톤

- 스위스는 연방국가로서 칸톤으로 구성됨. 스위스 헌법 제3조에 칸톤은 헌법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법적인 의미에서 대외적으로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님. 이 점에서 칸톤은 제한된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공법상의 사단으로서 독자적인 법인격과 자치권을 연방헌법에서 보장받고 있음.

- 게마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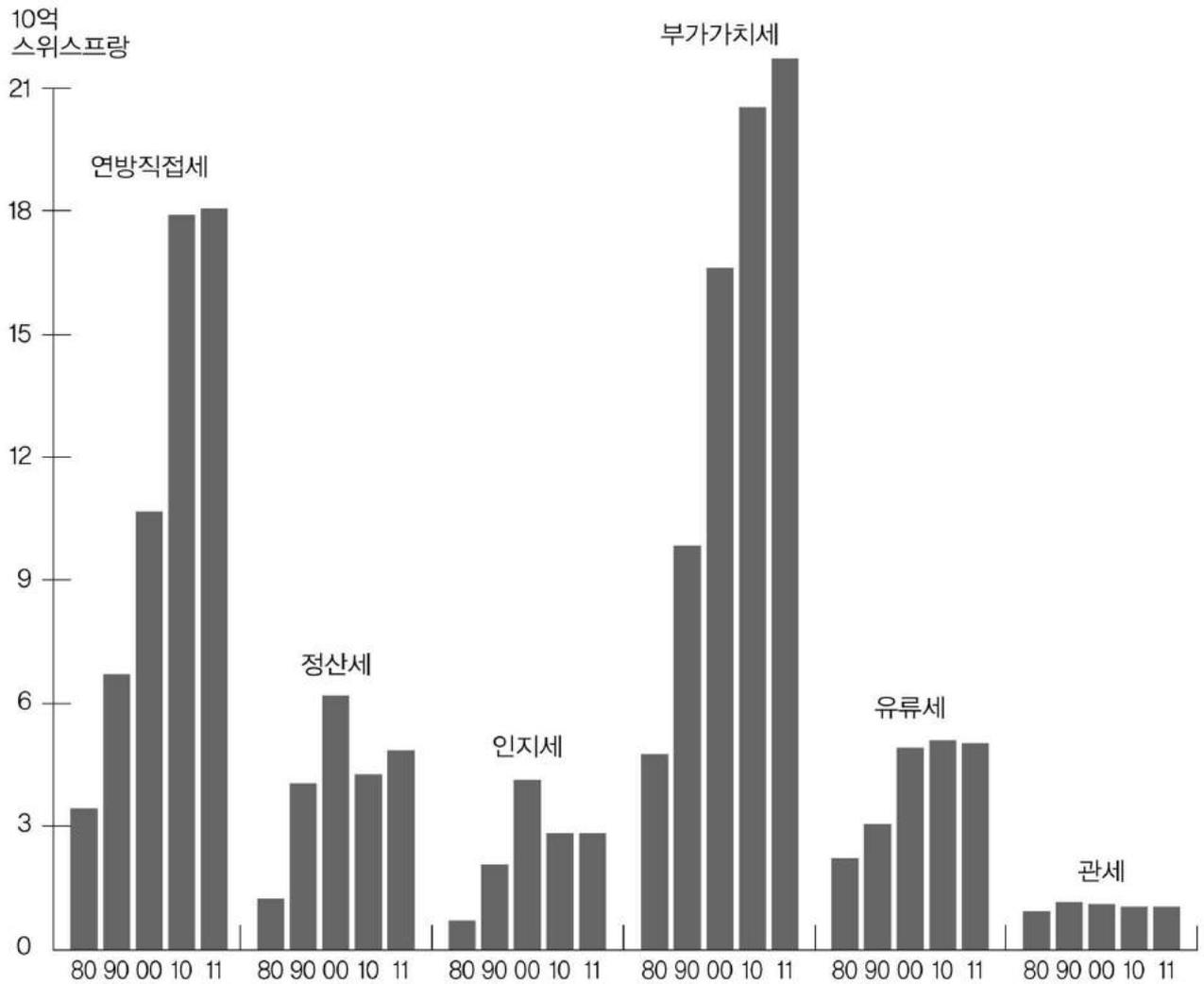
- 1999년 4월 18일 헌법개정으로 인하여 게마인데는 연방헌법에 규정됨. 게마인데는 연방헌법과 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칸톤법이 정하는 자치권을 보장받음(연방헌법 제50조). 즉 게마인데는 칸톤 안에서 자치권이 보장된 자치체로 인정됨. 게마인데는 칸톤법상의 공법상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공법상의 법인으로 지역적인 공공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음.

- 게마인데는 칸톤으로부터 보장된 자치권을 침해받는 경우에 게마인데 자치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 게마인데 숫자는 2000년 이후 지방자치 단체간의 통합이 진행되어 숫자가 감소하고 있음.

○ 스위스의 조세체제와 연방세

-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연방재정은 급격히 팽창함.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40년 전쟁이득세가 도입되었고 이어서 사치세와 방위세, 정산세가 1944년에 도입됨. 그 중 사치세와 정산세, 방위세는 후일 복지국가의 기초가 됨. 1958년에는 전시에 도입된 방위세와 상품 매상세가 헌법에 규정되었고 1959년 발효하였음.
- 1990년에는 연방직접세에 관한 연방법률과 칸톤과 게마인데의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률이 제정됨. 1941년부터 1958년까지 주된 연방세는 소득세였고 재산세가 보완적이었음. 1959년에 개인에 대한 재산세가 없어지고 1998년에는 법인에 대한 자본세가 없어졌음. 이들 세금은 칸톤세와 게마인데세로만 존속. 이때부터 연방의 직접세는 개인의 소득과 법인의 이득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됨.
- 연방이 점차적으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한 것에 비하여 칸톤은 대부분 기존의 세금에 한정함. 처음에는 재산세가 칸톤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었고 영업소득은 보완적으로만 징수되었음.
- 그러나 점진적으로 전통적인 재산세와 영업세는 일반적인 소득세로 전환되고 재산세는 보충적이 됨. 이러한 전환은 재산세 저감과 소득세의 증가를 의미. 칸톤 바젤에서는 이미 19세기 이를 도입. 1945년까지 열 개의 칸톤에서 뒤를 이었고 1970년에는 칸톤 글라루스가 마지막으로 참여하였음
- 연방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간접세인 소비세이고 그 중 부가가치세와 석유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직접세는 연방수입의 1/3 이상을 차지함

[연방의 주요세원과 수입]



- 자료출처 : SCSchweizerische Steuerkonferenz(2013), HWEIZERISCHE STEUERKONFERENZ.

- 칸톤과 게마인데의 세원은 연방세와 대조적임. 칸톤과 게마인데의 가장 중요한 세원은 개인에 대한 소득세, 재산세와 법인에 대한 이윤세 및 자본세임
- 2010년의 경우 이들 세수가 칸톤과 게마인데 총 수입의 89.3%를 이루고 있음. 칸톤과 연방, 게마인데의 세수 전체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가 되며 간접세는 약 30%임. 간접세 비중이 40~50%인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스위스에서는 간접세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편임

○ 스위스의 조세권에 관한 헌법 규정

- 스위스에서는 연방과 칸톤, 게마인데가 모두 조세권 있음. 조세권의 구분은 헌법에 의하여 정해짐. “칸톤은 연방헌법에 의해서 주권이 제한되지 않는 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아니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라고 규정된 연방헌법 제3조에 따라 칸톤은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도 모든 종류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헌법이 연방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연방의 배타적 조세권)은 제외됨
- 게마인데는 칸톤의 헌법에 의하여 세금 부과종류가 정해짐. 따라서 동일한 세원에 대해서 연방과 칸톤, 칸톤과 게마인데가 중복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런 의미에서 연방과 칸톤, 게마인데는 세원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으며 중복과세(이중과세)가 허용됨.

○ 조세 국민(주민)투표

- 스위스 조세체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 시민들이 그에게 어떤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직접 결정한다는 것을 들 수 있음. 국민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 연방과 칸톤의 헌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로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필요적 국민투표). 세율과 단위세액, 조정세율 등을 정함에 있어서도 주민의 참여가 보장됨.
- 칸톤이나 게마인데의 조정세율의 변경은 칸톤이나 게마인데 의회 또는 주민총회의 다수결로 결정함.

○ 스위스의 징세기관

- 스위스의 징세기관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름.
- 연방직접세는 대체로 칸톤의 관계행정 기관에서 징수함.
- 칸톤세와 게마인데세의 징수기관은 칸톤마다 다름.
- 칸톤세와 게마인데세를 칸톤에서 징수하는 칸톤, 양자를 모두 게마인데에서 징수하는 칸톤, 칸톤세는 칸톤에서, 게마인데세는 게마인데에서 각각 징수하는 칸톤 등 다양함.

○ 스위스의 정부별 세원배분 개관

- 스위스 연방과 칸톤, 게마인데 간의 세원배분

구 분	직접세	간접세
연방	소득세 이윤세 정산세 연방카지노세 병역대체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담배세 맥주세 주세 유류세 자동차세 관세(수입-수출 관세)
칸톤	소득세, 재산세 인두세 또는 가족세 이윤세, 자본세 증여세, 상속세 복원이윤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토지세 양도세 칸톤 카지노세	오토바이세 견세 유흥세 칸톤인지세 복권세 물세 기타
게마인데	소득세, 재산세 인두세 또는 가구세 이윤세, 자본세 상속세, 증여세 복권당첨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토지세 양도세 영업세	견세 유흥세 기타

○ 스위스 조세경쟁의 대표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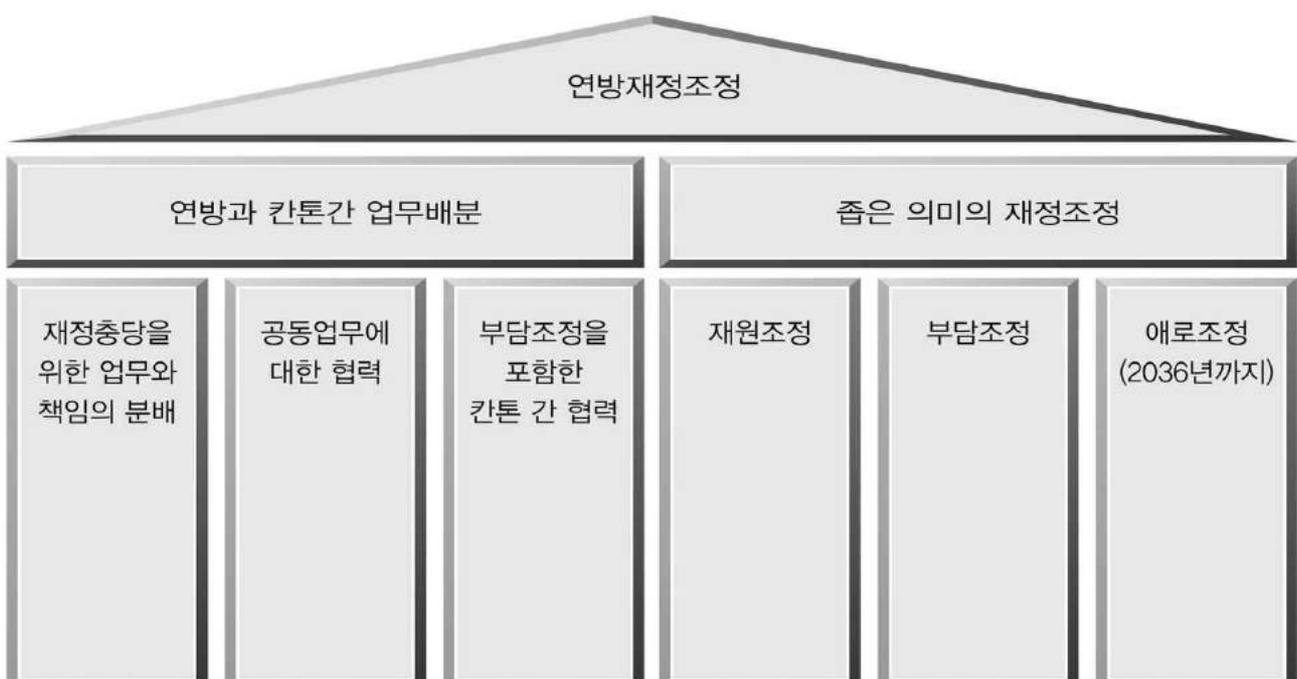
- 스위스의 칸톤과 게마인데는 조세자율권을 가지고 있음. 칸톤의 세법은 조세조화법 규정에 합치해야 하지만 이는 형식적 요구에 대한 것임. 세율을 비롯한 실질적 내용에 대한 조화는 국민의 여론에 밀려 실현되지 못함. 칸톤과 게마인데의 세율과 세목에 대한 결정은 국민(주민)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연방에 의한 조정 내지 통일 노력은 실현되기 어렵고 지방정부 간의 조세경쟁이 발전되어 옴. 주민들의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주거지나 기업의 입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금이 중요 변수가 됨.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는 세금 문제를 결정하는데 국민을 참여하게 함.

- 조세경쟁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것으로 칸톤 옵발덴(Obwalden)의 2005년 역누진세 도입을 들 수 있음.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종전의 누진세율을 개정하여 반대로 세율을 낮추어 주는 역누진세를 규정함. 이는 기업과 부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입지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채택한 것임. 2005년 12월 11일 옵라덴의 주민들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함. 유권자의 86%가 세법 개정안에 찬성, 세법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은 (1)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감경, (2) 연간 소득 30만 프랑 이상인 자에 대한 역누진적 세율 적용이었음.

○ 스위스의 재정조정제도

- 재정조정(Finanzausgleich)이란 지방정부마다 다른 재정적인 능력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 재정조정에는 수직적인 재정조정과 수평적인 재정조정이 있음. 수직적인 재정조정(vertikaler Finanzausgleich)은 상위정부가 하위정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 이에 대해서 수평적인 재정조정(horizontaler Finanzausgleich)은 칸톤과 칸톤 간 또는 동일 칸톤 안에서 게마인테와 게마인테 간에 재정적인 조정을 의미

[스위스 연방재정조정제도 개요]



4. 스위스 지방세 제도 시사점

○ 지방세에 대한 헌법적 보장

- 지방재정 자주성의 헌법적 규정

-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지방재정에 대해서 직접 보장하는 규정이 거의 없고,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세법에 관한 한 전국적인 획일성을 예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입법권을 헌법 제117조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자주성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스위스에서는 세법의 제정권을 지방정부인 칸톤의 고유권한으로 인정, 칸톤이 법률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칸톤마다 세목과 세율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칸톤은 매우 넓은 범위 안에서 재정자주성을 가짐. 또한 스위스 연방헌법은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연방법률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자율성이 연방법률로 과도하게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해 놓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기초지방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게마인데의 경우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칸톤의 헌법과 칸톤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재정자주성을 가짐.

- 세금의 종류를 연방헌법과 주 헌법에 규정

- 연방세에 대해서는 과세원칙과 연방세의 종류를 헌법에 규정. 연방의 과세권은 연방헌법에 의해서 위임된 것이므로 헌법에 규정된 세목과 세율에 한정됨. 새로운 연방세를 도입하거나 헌법상의 세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방헌법의 개정 필요.
- 칸톤세에 대해서는 각 칸톤의 헌법에서 규정, 게마인데세에 대해서도 각 칸톤의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칸톤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됨.
-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재정조항이 매우 빈약함. 헌법 개정이나 헌법을 둘러싼 정치적인 배경이 주로 재정문제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재정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헌법 개정을 하는 경우에 헌법에서 조세의 배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스위스 헌법은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 스위스가 연방제라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헌법에서 국세 및 지방세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함.

○ 조세조정률의 도입

-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칸톤의 세법으로 규정됨. 하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은 해마다 지방의회가 결정하는 조세조정률(Steuerfuss)에 의해서 매년 달라짐. 세법에 규정된 것보다 적은 조세조정률(예컨대 70%)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정세율을 가중하는 조세조정률(예컨대 145%)도 적용할 수 있음.
- 지역 경제사정이나 재정수요, 담세능력, 이웃 지방의 조세부담률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실제 조세부담률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조세자주성을 보장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에도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조세 정책을 위하여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징수기관의 다양화

- 우리나라는 국세는 국세청에서 징수하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도록 징수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음. 이에 반해 스위스의 경우에는 연방제도 칸톤이나 게마인데에서 징수함. 칸톤이나 게마인데에서 연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연방세의 상당한 부분을 징수한 칸톤이나 게마인데의 수입으로 하고 있음.
- 칸톤은 연방에 연방세 징수액의 70%를 인도함. 칸톤의 몫은 30%, 그 중 17%는 징수한 칸톤에 남게 되고 13%는 칸톤 간 재정조정을 위한 재원이 됨. 후자는 결국 연방계정으로 유입됨.
- 한국에서도 징세기관을 이원화하고 지방세원을 국세징수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과세관청의 지방화를 구상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임.

○ 중복과세(이중과세)

- 스위스에서는 연방과 칸톤, 게마인데는 동일한 세원에 대해서 각각 과세를 할 수 있음. 예컨대, 소득세, 이윤세, 카지노세 등에 대해서는 연방과 칸톤이 각각 과세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칸톤세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마인데세를 부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칸톤에 따라서는 게마인데세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칸톤세의 일부를 게마인데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기도 함.
- 스위스에서는 연방과 칸톤, 게마인데 간의 수직적인 이중과세 내지 중복과세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에 칸톤과 칸톤, 게마인데와 게마인데 간의 수평적인 이중과세 내지 중복과세는 헌법에 의하여 금지됨.
- 주요한 세원이 대부분 국세로 규정되고, 일단 국세로 규정된 세원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하는 이중과세 금지가 우리 헌법상 근거가 없으며, 반드시 이를 금지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스위스나 독일 등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국세와 지방 간의 세원 재조정도 중요하지만 이중과세를 허용하는 경우에 지방세의 과소 비중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세법 제정과정에서 국민 참여(주민투표)

- 스위스에서는 세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 투표나 국민투표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이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의한 일방적인 세금인상을 억제하고, 자원 절약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특히 칸톤 간의 실질적 조세경쟁을 제한하려는 제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부결한 것은 국민의 힘으로 스위스와 칸톤의 조세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음.

○ 가계별 소득기준 과세

- 스위스에서는 과세를 함에 있어서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계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부부의 소득을 각각 따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 단순 비례세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지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개인단위 과세와
가계단위 과세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음.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소득이 있는 경우와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양자의 세금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 예컨대 맞벌이 부부가 각각
4,000만 원을 버는 경우와 한 사람만 8,00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경우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2배 가까운 세금을 부담해야 함. 따라서 이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스위스에서는 가정을 최소의 소비단위로 보고 가족의 소득에 대해서
합산해서 소득으로 보고 그 소득에 상응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
과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임.

○ 조세경쟁을 통한 입지 경쟁

- 스위스에서는 칸톤마다, 게마인데마다 각각 다른 세목과 세율을 적용하고,
각각 상이한 재정조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업과 주민을 두고 지방 간
경쟁이 치열함. 이러한 조세경쟁이 조세의 통일성, 조세평등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나, 전반적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률을 경감시키고,
스위스의 입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함. 연방정부에서는 조세의 절차나
형식 등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통일성을 추구하면서도 세목과 세율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획일화나 통일을 금지하고 있음.
- 실질적인 조세통일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로 부결된 것은 스위스
국민들이 조세경쟁을 통한 긍정적인 측면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줌.
조세경쟁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스위스의 지방 간
조세정책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재정지수를 기준으로 한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 노력을 소홀하게
하고, 예산 낭비에 대해 관대하게 하여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재정 지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 빈곤지역에 지원하여 재정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스위스의 새로운 재정 조정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 노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절약을 약화시키지도 않으면서 실질적인 재정균형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지리적, 인구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추가 비용은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부담의 공평 분담을 꾀하고 있음.

○ 수직적 재정조정과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 우리나라는 재정조정의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를 취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지방과 지방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지방의 참여는 없음. 스위스에서는 연방과 칸톤, 칸톤과 게마인데 간의 수직적인 재정조정도 인정되지만, 칸톤과 칸톤 간, 게마인데와 게마인데 간의 수평적인 재정조정도 인정됨. 재정조정의 재원에 있어서는 수직적인 재정조정이 앞서지만 수평적인 재정조정의 규모도 적지 않음. 지역 간 연대를 통하여 재정 조정을 하고,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스위스의 재정 조정제도는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제도임.
- 재정조정의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칸톤도 일정 몫을 하도록 함으로써 칸톤 간의 연대성 내지 협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스위스에서는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칸톤 간 재정조정을 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가 재정조정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약 1/3).
-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와 국세의 비중이 2:8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려고 하면 지방 간의 재정격차가 확대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논리가 항상 등장함. 이러한 지방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면서도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스위스의 수평적인 재정조정제도가 좋은 참고가 될 것임.

III 정책연수 후기

■ 견문소감(세무6급 김대형)

2016년 전국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리 도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인센티브 5억원), 징수 담당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향상을 위하여 유럽 4개국 정책연수를 실시하게 되었다. 우선 국가별 정책과제로 프랑스 납세편의시책, 스위스 조세부과 자율결정권, 이탈리아 신세원 발굴 그리고 스페인의 체납처분 제도를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유럽 4개국 정책연수 일정이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0여년간의 고도성장 속에서도 '분배'의 문제를 중시했다. 이는 1789년부터 1799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진행된 프랑스 시민 혁명과 1871년 세계 최초 공산정부 파리코뮌의 자치공동체 정신에 기인한다고 했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현재도 파리시청을 비롯하여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관심사는 '빈익빈 부익부' 등 자유시장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자치공동체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세가 부유세(순자산세)다. 부유세는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 부유세는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08년 부활해 현재 연간 소득 130만유로(약 15억3,000만원) 이상인 자산가에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유세 도입을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본다.

스페인인 지방세와 국세 비중이 55:45로 OECD 국가들 중 최고의 지방재정 분권국가이다.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 국세의 절반을 지방정부로 양도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세목을 신설하고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조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 자원 구성 현황은 자체자원 50%, 이전재원 40%, 관광수입 10%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함께 발전하고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언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스페인처럼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보완할 수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이탈리아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2011년 이후 외국인 대상의 여행자세(Tourist Tax)를 신설하였는데 로마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기준으로 1박의 경우 4성급 및 5성급 호텔은 3유로 그 외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2유로를 징수한다. 또한 베네치아의 경우는 유럽의 관광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베네치아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버스 1대당 600 유로를 징수한다. 우리 도 역시 우리나라 70%의 섬을 보유하고 있고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하여 관광 잠재력이 큰 만큼 광주에 있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와 연계하여 세입확충차원에서 향후 관광세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스위스는 지방세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지방세 세목과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투표를 통하여 지방마다 지방세 체제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칸톤(26개주)들이 칸톤 간의 조세경쟁을 통해서 주민과 기업을 유치하는 입지경쟁을 하고 있다. 최근 실질적인 조세통일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로 부결된 것은 스위스 국민들이 조세경쟁을 통한 긍정적인 측면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세경쟁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스위스의 지방 간 차별적인 조세정책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번 유럽 정책연수는 4개 팀별 지방세 정책과제에 대한 사전조사와 토론 및 현지 기관방문, 역사·문화자원 및 자연경관이 빼어난 도시*들의 견문을 통해 지방세 분야 등에 대한 연수자들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당초 계획되었다가 가지 못하게 된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 견문은 코르도바를 배경으로 한 '기수의 노래'로 대신해 본다. 아울러 남서유럽 기관 방문 세부일정과 다양한 볼거리 및 숙박 등에 배려를 아끼지 않은 빛가람 여행사 김대건 대표께 감사드린다.

* 자연경관이 빼어난 유럽도시

1. 프랑스의 상징 파리 에펠탑과 몽마르뜨
2. 스위스 산악터널 철도 융프라우(jungfrau)
3. 이탈리아 수상 도시 베네치아
4. 지중해 절경 모나코 ~ 니스 해안도로
5. 바르셀로나 기암괴석 몬세라트(회백산) 수도원
6. 세고비아 로마 수로교와 백설공주의 성 알카사르

기수(騎手)의 노래

-로르카(Federico García Lorca, 1898~1936)

코르도바*

멀고 외로운 곳

검은 조랑말, 큰 달
안장 배낭엔 올리브 몇 개
비록 나 길을 알아도
끝내 코르도바에 가지 못하리

평원을 가로질러, 바람속에서
검은 조랑말, 시뻘건 달
죽음이 나를 지켜보고 있네
코르도바 탑 위에서

아아, 떠나면 길이어!
아아, 장한 나의 말이여!
아아, 죽음은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
나 코르도바에 닿기도 전에

코르도바

멀고 외로운 곳

* 코르도바 : 이상향(Utopia)



- 출처 : 코르도바(wow.hanatour.com) -

전문소감(세무6급 남숙희)

- 10박 12일이라는 짧은 연수기간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4개국의 각종 조세업무 등 모든 행정정책을 세세히 알아 볼 수는 없었지만, 유럽 선진국 방문을 통해 조세정책을 비롯한 도시행정과 미래정책방향, 주민편익정책 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최근 지방자치 역할이 날로 커짐에 따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의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지역적인 세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포기하고 중앙정부의 배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을 볼 때 스페인의 국세의 지방세 이양 사례와 지방세의 선택적 조세권을 인정하는 자치구의 특별세 사례는 우리가 좀 더 깊고 관심있게 연구해야 하는 부분이라 여겼음.
-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삶의 질을 규정하는 사회복지·환경·교육정책 등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유럽과 비교해 보는 계기가 되었음.
 - 사회복지·교육정책 등 사회안전망이 탄탄한 유럽의 경우 대학 졸업장이 사회적신분과 경제적 능력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진로(직업방향, 학문)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대학은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사람만 간다고 함.
 - 사회복지시스템과 교육을 대부분 국가에서 책임지는 유럽을 잠시 보면서 대학 입시를 위한 사교육에 거의 모든 학부모와 아이들이 시달려야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지만, 자원이 풍부한 그들의 환경과 달리 한정된 자원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법 또한 열심히 배우는 것과 근면 성실한 국민성을 키워가는 것이라 여겨졌음.
- 유럽은 한마디로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찬란한 문화와 역사적 유물 덕분에 후손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았음. 수많은 전쟁의 소

용돌이 속에서 문화적 가치가 다른 나라에서 빛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장들도 있었음에도 조상들의 유적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

- 높은 건물이 스카이라인의 균형을 깨트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건물 층수를 규제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건물들이 유적지로 간주,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보통 까다로워 수백년 또는 수천년 전의 건물들을 그대로 내부구조만 바꾸어 사용하고 있었다. 건물들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과 세밀한 건물 청소방법 등 하나하나가 시간의 역사를 자원으로 여기는 그들의 인식을 엿볼 수가 있었음.
- 수천년의 세월을 지닌 세계 자연·문화 유산자원으로 가득한 유럽을 보면서 자연·문화유산자원을 소중히 보존·관리하며 또한 지역주민과 공생 가능한 세계유산 개발정책을 펼쳐 나가는 등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게 크다는 것을 이번 연수를 통해 느끼게 됨.

○ 해외연수를 마치면서 10박 12일이란 짧지 않은 일정을 소화하느라 힘도 들었지만 유럽의 조세정책을 우리 업무에 접목하는 방안 등 보다 나은 세무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선진 조세행정 기법을 접목하여 지방 세정운영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 해외로 나가면 모두가 외교관 이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행동 하나 하나에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한국인 = 진정한세계인” 이 될 수 있도록 국제화마인드 함양에도 우리 모두가 주력해야 할 문제임을 느꼈음.

IV 참고자료

□ 프랑스

1. 안창남, 『프랑스의 지방세 제도』 2013.
2.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2009.
3. 김유찬 · 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2009.
4. 행정자치부, 『2016 주요국 지방세제도 비교연수 국외연수 결과보고』 2017.1.
5. 프랑스 행정구역(<http://blog.naver.com/yc7600/220331999060>)
※ 프랑스 데파르트망(<http://blog.naver.com/ykhan64/220397945732>)

□ 이탈리아

1. 이탈리아 개황, 2009. 7., 외교부
2. kotra 국가정보-이탈리아, 밀라노무역관, 2013.12.20., kore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경상남도 지방세담당공무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2008.5.)
4.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진 지방세제도 벤치마킹 국외연수 결과보고서(2014.11.)
5. 이탈리아 행정구역(<http://blog.naver.com/jayokim/110051327110>)

□ 스페인

1. 스페인의 지방세 제도(김은경 연구, 2013.11,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포럼 2014년, 제13권 64~70쪽(총7쪽)
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76129&cid=40942&category=40241>(두산백과 에스파냐 자료)
3. OECD (2013), “Spain”, in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2012, OECD Publishing.
4. <http://www.agenciatributaria.es>
5. <https://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
6. 스페인 행정구역(<http://blog.naver.com/ykhan64/220409232912>)

□ 스위스

1. 안성호(2011), 「스위스연방 민주주의 연구」, 대영문화사
2. 이기우(2013), 「스위스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3. 스위스 행정구역(<http://blog.naver.com/ykhan64/220416034381>)

*** 유럽 정책연수 결과보고서 작성 ***

- 총 관 : 전라남도 세무6급 김대형
- 1팀(프랑스) : 여 수 시 세무7급 김광선
- 2팀(이태리) : 담 양 군 세무7급 장윤경
- 3팀(스페인) : 영 암 군 세무6급 남숙희
- 4팀(스위스) : 해 남 군 세무7급 최수진